

1999 생활 시간 조사 종합분석 사업 보고서

2001. 10

머 리 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에 처음으로 전국의 약 17,0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서 가구원이 2일(48시간) 동안의 행동과 시간을 직접 기입하는 조사방식으로 사생활침해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의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조사였으나, 여러 단계의 준비를 거쳐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쳤고 유용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다 널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초에 5개 주제를 선정하여 종합분석사업을 시작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번에 종합분석 내용을 주제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별 보고서 중 제1부에서는 주부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반영을 제시하였으며 제2부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각종 법체계 등에서 가사노동의 저평가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시간 활용을 미국, 일본, 핀란드 등과 국제적 비교를 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제4부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인구의 특성별로 살펴보고 생활시간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한국인의 여가 및 문화시간 활용을 시간량과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생활시간조사의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관련분야별로 연구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시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종 경제·사회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1년 10월

통 계 청 장
운 영 대

차 례

- 주부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적 1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연구
• 연구자 : 성균관대학교 김 준 영

 -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97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 국민계정체계 및 법체계 적용을 중심으로 -
• 연구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 숙 재
윤 소 영

 -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 비교 195
• 연구자 : 서울대학교 이 기 영
고려대학교 이 연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 의 숙
대구대학교 조 희 금

 -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331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승 권
정 경 희
송 수 진

 - 한국인의 문화 및 여가 시간 분석 515
• 연구자 : 충남대학교 이 재 현
-
-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1)

주부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연구

연구자 : 성균관대학교 김 준 영

목 차

I.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의 필요성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내용	11
II. 기존연구의 비판적 고찰	12
1. 투입에 의한 평가방법	13
2. 산출에 의한 평가방법	17
3. 투입-산출에 의한 평가방법	17
III.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모형	18
1. 각 방법별 평가모형	18
2. 주부의 유형별 무급(가사)노동시간	22
IV.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측정	28
1.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평가	28
2. 주부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 비교	44
3. 국내 기존 연구와의 비교 분석	53
4. 국제적 비교	54
5. 무급(가사)노동가치의 결정요인분석과 회귀분석	57

V.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59
1. 회귀분석 : 경제성장률 기여도	60
2. Tobit분석 : 생산성 기여도	62
3. Granger 인과성 검정	64
VI. 무급(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활용	65
1. 손해배상	65
2. 재산분할 및 조세	68
3. 사회보험	70
4. 무급(가사)노동 조사관련 개선점	71
VII.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89

표 목차

<표 1> 전체여성과 주부의 활동유형별 무급노동시간	24
<표 2> 주부의 활동유형별, 연령계층별 무급노동시간	26
<표 3>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연령별 대응직종 및 시간당 평균임금	29
<표 4>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	30
<표 5>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 참여수	31
<표 6>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평가액	32
<표 7>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활동유형별, 연령별 평가액	33
<표 8> 연령별 시간당 주부대체비용 I	34
<표 9> 연령별 시간당 주부대체비용 II	35
<표 10> 주부대체비용법 I 의 평가액	36
<표 11> 주부대체비용 II 의 평가액	37
<표 12> 총기회비용법의 평가액	38
<표 13> 연령별 시간당 기회비용	39
<표 14> 순기회비용법의 평가액	41
<표 15> 임금가중치 I, II	41
<표 16> 통합비용법 I 의 평가액	42
<표 17> 통합비용법 II 의 평가액	43
<표 18> 각 방법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 평가액 종합표	45
<표 19> 1인당 월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 비교	53
<표 20> 무급노동의 추계가치와 GDP의 비율	55
<표 21> 무급(가사)노동(남성, 여성 전체)가치의 국제적 비교	56
<표 22> 무급노동가치의 회귀분석 결과	58
<표 23>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시계열 추이	59
<표 24> 생산성기여도 방정식 추계결과	63
<표 25>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64
<표 26> 주부의 손해배상액 비교	66

그림 목차

<그림 1>	전체여성과 전업주부의 활동유형별 무급노동시간 비교 ...	23
<그림 2>	전업주부의 연령계층별 무급노동시간 비교	25
<그림 3>	전업주부의 연령별 총평가액	47
<그림 4>	전업주부의 연령별 1인당 평가액(연간)	48
<그림 5>	전업주부의 연령별 1인당 평가액(월간)	49
<그림 6>	전업주부의 연령별 GDP대비 비율	50
<그림 7>	각 가치평가방법별 총평가액 비교	51
<그림 8>	각 가치평가방법별 GDP 대비	52
<그림 9>	GDP와 GDP'의 시계열 추이의 비교	60
<그림 10>	주부무급노동의 생산성 기여도	63

I. 주부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국민계정에서 계측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이외에 가계 내에서 최종자가소비를 위한 가사 및 개인 서비스에 의하여 무급생산(unpaid production)된 비시장생산활동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측정 필요성이 심각히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5년마다 Time use survey data를 활용하여 unpaid work(domestic work, household work)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1993년에는 UN의 '국민계정' 권고안에 따라 국민계정의 가계 부문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가계생산에 대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of unpaid household production)을 개발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1999년 통계청에서 전국단위의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기준의 시발점으로서 가계 내에서 이루어진 무급노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평가 및 평가모델 개발이 시급한 사회·경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소수계층에 속하는 결손가정 및 여성가장인 가계들이 직면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개선과 함께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통가치에 부합되는 삶의 질적인 기여를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긴요한 실정이다.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선진적 경제·사회정책 수립과 제도의 도입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동 분야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일본은 1976년부터 「생활시간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기획청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가된 전체무급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의 약 15%~2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여성무급노동의 가치, 특히 주부¹⁾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과 정당한 보상, 나아가서 남녀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시켜나가야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그 동안 國民所得과 국가 富는 경제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경제활동인력과 자본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은 생산주체인 기업에서 유출된 부가가치가 소비주체인 가계와 혼합주체인 정부로 유입된다는 기존의 정형화된 메커니즘에 의하여 국민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은 국민경제의 순환적인 흐름과 부의 창출, 경제주체의 성격과 경제활동인력의 범주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 한계성의 핵심은 가계를 소비주체로서 인식해온 고정관념에서 기인되었으며, 주부의 가사노동을 가치창출의 기본인자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衛星計定에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 즉 家計生産(household production)價値의 測定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 주요배경은 「1993년 新국민소득계정(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 가계의 최종 자가소비(final self-consumption)를 위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의 無給生産(unpaid production)을 국민소득계정에 포함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추천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여성들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기여도의 재평가 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나아가서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비교할 경제지표(GDP)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신국민소득계정의 기본정신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무급노동종사자가 40% 이상이나 되고 1차산업이 중심인 개발도상국의 국민소득 측정에 가사노동가치가 반영될 수 있게 되었고, 선진국의 경우 가계생산이 창출하는 삶의 質的인 측면을 국민소득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복지분야의 정책을 효율

1) 본 연구에서는 주부를 '20세 이상 미취업 유배우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는 극히 단순한 평가방법을 원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이나 가사노동가치평가를 결정하는 요인분석 등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 또는 주부의 생산활동 내지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1990년대 이후 Chandler(1994), Fitzgerald and Wicks(1990), Fitzgerald, Swenson and Wicks(1996), Fukami(1999), Jackson(1992), James(1996), Katsuki(1997), Trewin (2000), UN(1998, 1999) 등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국내의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는 문숙재(1982, 1984, 1997), 김선희(1994), 김정희(1996), 김태홍(1997, 2000), 정무장관(제2)실(1990, 1991, 1993, 1997) 등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다. 이들 국내의 연구 중 보다 객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UNDP의 무급노동사업의 일환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여성개발원에서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김태홍(2000)의 연구이다. 1999년 이전의 국내연구들이 무급노동가치평가의 시도에 있어서 공식적인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소규모표본을 기초로 조사한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태홍(2000)의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에 비하여 무급노동가치추정의 객관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무급노동가치평가는 평가방법에서의 객관도는 진전되고 있으나, 정확도와 정밀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추계과정에서 노동유형별 또는 직종별 미시적인 임금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중분류 또는 평균임금을 사용하였거나, 연령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가치평가에 있어서 무급(가사)노동의 임금적합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여성 또는 주부의 인구를 추계하여 각 연령별 주부수를 가치평가의 과정에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만한 연령별 주부인구추계가 생략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가치추계과정에 투영시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비전 하에서, 비시장생산(non-market production)부문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제도적인 차원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가사노동가치의 신뢰성 있는 평가모델 개발 → 가사노동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및 가사노동의 국민경제 기여도 측정 → 제도적 방안 제시

첫째, 기존의 대부분 연구가 소 표본을 토대로 가정주부의 가사활동(가정관리업무, 가족 보살피기) 가치추계에 국한하였으나,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주부의 가사활동 업무의 세분화된 가치측정과 지역봉사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치측정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주체 단위로서 가계뿐만 아니라 생산주체로서의 가계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측정방법 자체는 별다른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금 더 응용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사노동가치의 측정방법으로는 시장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이 있는데, 이들 각 모델의 추계방법에는 속성상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발전된 최근 평가모형(예 : 호주통계청 모형(2000, 10), *Luxembourg Income Study* 모형 등)을 기초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들 모형을 가중 평균한 통합평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추계된 가사노동가치의 시계열을 구축하여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을 통한 경제적 함의를 분석하고, 가사노동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이들 요인의 변화에 따른 가사노동가치의 변화추이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은 경제·사회적 환경인자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Simulation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 실질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현실성 있게 산출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임금문제, 사회학적·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

킬 수 있는 노동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너지효과와 제도적 보완책을 유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차원으로 본 연구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주요 분석내용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논문의 고찰과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기존연구에 한계점을 보완하게 되고, 제 3장에서는 무급노동가치의 평가모형을 「투입물접근법」에 의한 시장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비교 분석한 다음, 기존 평가모형의 가치평가가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모형을 가중평균한 「통합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참여가 전체여성과 비교하여 어느 활동에서 가장 편차가 크고 작은지를 비교한 후, 제 4장에서는 1999년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주부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고,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 할 것이다. 평가된 주부 무급(가사)노동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찾아냄으로써 제 5장에서는 향후의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의 추이를 예측하는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6장에서는 1999년의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하여 지난 20년간의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의 시계열을 총기회비용법에 의해 연결하고, 회귀분석과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주부 무급(가사)노동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친 기여도를 실증분석하게 된다. 또한 Granger 인과성 검정을 통하여 국민소득과 주부 무급(가사)노동간의 인과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추계된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 7장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및 조세, 사회보험 측면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무급(가사)노동조사와 관련된 개선점을 살펴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도출된 주요한 결론과 내용을 요약할 것이다.

II. 기존연구의 비판적 고찰

주부의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가사)노동의 가치측정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형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화폐적 가치측정이 이루어져한다. 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무급(가사)노동의 생산량이 측정되어야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계생산을 위해 투입된 시간사용을 기반으로 측정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표준화된 합의가 없어서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가계생산의 정의와 관련된 어려움은 가계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과 소비활동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문제와 중복생산(joint production)과 동시활동(joint activity)을 분리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사용조사방법」의 개선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가계생산을 위해 투입된 무급(가사)노동의 시간사용조사를 기반으로 무급(가사)노동의 범주에 대한 정의와 시장화된 산출물 측정을 위한 적합한 시장대체가격의 존재여부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무급(가사)노동가치의 추정노력은 보편적으로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Hawrylyshyn, 1976, 1977 ; Murphy, 1978). 이 이외에도 기회비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요구임금법(Zick & Bryant, 1983 ; Bryan & Linke, 1985)과 함께, 상실비용과 상실임금을 기초로 한측정방법(Chadeau, 1985)도 있다. 주목할 만한 측정방법으로는 두 가지 투입-산출기준을 사용하여 가계생산, 즉 무급(가사)노동의 가치측정을 범주화(Goldschmidt-Clermont, 1990 ; Vihavainen, 1997)하고 있다. 이 방법은 측정에 사용된 단위(수량 또는 화폐적 단위)와 투입-산출(input-output)에 의해 화폐적 가치인 임금이나 가격을 수량단위에 전가시킴으로써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국민계정의 총계와 비교될 수도 있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가계의 소득과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방법상의 이점은 무급(가사)노동의 분석적인 영역을 다각도로 확대, 발전시켰다. 여기에서는 먼저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투입에 의한 평가방법

(1) 시장대체비용법

1) 개별기능대체비용법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을 각 활동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활동에 사용된 시간을 측정 한 후 대체직종의 시장임금율을 적용시켜 전체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급(가사)노동을 각각의 활동유형별로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그 활동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전문직업인(Specialist 또는 개별기능별 전문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급(가사)노동을 세분화하여 각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의 임금율도 산출해야 한다.

이 방법은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수행자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단지 가사노동량에 해당하는 시장대체자의 서비스의 가치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업무능력이 전문가만큼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가치가 과대평가 될 수 있다(Hefferan, 1982). 또한 임금을 적용에 있어서 전체근로자의 임금, 여성근로자 임금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대상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업영역분류 및 대체직업과 적용임금을 선택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비한다면, 다른 평가방법들의 상·하편기(upward·downward biasness)를 줄일 수 있으며(Hawrylyshyn, 1976) 주부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의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추정 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기존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기간 및 가사노동의 범주에 따른 표본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란 어렵지만 김정희(1995), 문숙재·정영금(1991, 1997)의 연구에서는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개별기능추계 방법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김태홍(2001)의 연구에서는 총기회비용법의 추계결과 다음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가치평가방법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김태홍(2001)의 연구와 동일하게 총기회비용법 다음으로 개별기능가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부대체비용법

주부대체비용법은 주부가 행하는 무급(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할 만한 직업인을 가게내에서 고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보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산의 편의성으로 인해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Adler & Hawrylyshyn, 1978 ; Eisner, 1978 ; Goldschmidt-Clermont, 1982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직업의 선정에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선택되는 대체직업이 가정부나 파출부의 시간당 평균임금, 또는 총괄관리자 직업이었다. 이 경우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은 가정부나 파출부의 임금을 이용할 경우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가치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총괄관리자를 대체직업으로 선정할 때에는 직업자체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대평가 된다. 이와 같은 양방향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급(가사)노동의 영역에 따라서 가정부와 총괄관리자 2인을 동시에 대체직업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게 내에서 모든 일을 총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점(Schettkat, 1985)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완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한 사람의 주부가 모든 가사노동을 전부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사활동유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게 내에서 동일하게 가사노동이 수행되지도 않는다(Chadeau, 1992)는 점에서 한계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2) 기회비용법

1) 총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implicit income)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방법으로써 합리적인 사람이 가게생산

또는 무급(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할 때, 시간당 가계생산의 한계가치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율과 같은 점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주부의 시장임금율이 가계생산의 한계가치를 정확히 반영된다고 한다면, 시장임금율에 무급(가사)노동시간을 곱해 주면 가계생산의 총가치뿐만 아니라 무급(가사)노동의 잠재적인 가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계 내에서의 주부의 1일 노동가치는 시장에서의 1일 노동가치와 같다는 것이다(Hefferan, 1982).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정교한 분석틀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가정환경적 조건과 동일한 가사노동시간의 조건하에서도 학력수준, 기술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이로 인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주부가 “집에 있는 것(be home)”의 가치가 잠재적인 시장소득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간주할 경우에 이때 집에 있는 것의 가치는 단순히 가사서비스만의 개념이 아니라 주부의 총가치를 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부대체비용법과 비교하게 되면 기회비용법으로 추정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Hawrylyshyn, 1976). 또한 생산시간으로서 투입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도 동시적인 가사활동시간 및 작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효율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려할 수도 있으므로 가치추정치가 과대평가되는 경향도 있다(Graham, 1982). 기존연구에서 살펴보면, 미국에서 1960-70년대를 대상으로 가계생산을 측정한 결과 기회비용의 추정치가 시장대체비용의 추정치 보다 GNP의 약 1-3%정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순기회비용법

Nordhaus & Tobin(1972)은 전통적인 GNP 측정을 수정하려는 시도에서 가계에서 생산된 서비스가치를 기회비용법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발전시켜 보다 개선된 복지개념인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를 도입했다. 또한 적용하는 임금에 세금공제 특히 노동관련비용(교통비, 의복비 등)을 공제한 순(net)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기회비용법의 접근을 시도하였다(Murphy, 1982). 그러나, 문제점으로서 비자발적 실업자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금전적 급부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Murphy, 1982 ; Zick & Bryant, 1983), 이 방법은 가사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특징이 있다.

(3) 유보임금법

시장대체비용법에서 시장임금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편기(biasness)를 낮추기 위해서 기회비용법이 개발되었으나, 위에서 지적된 기회비용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평가방법이 유보임금법(reservation wage method)이다.

유보임금이란 비취업주부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최소한의 임금인 동시에 취업주부에게는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즉 주부들의 가사노동에서의 시간당 한계가치를 반영한 기회비용의 개념이지만, 기회비용법의 문제점들을 다소 보완한 방법이다.

근로자들의 유보임금은 시장임금과 비교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로 시장대체비용법의 경우에 취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한 차이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구성원들이 가계생산에 기여한 시간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회비용법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Zick & Bryant, 1983). 이런 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의 개념을 접목시킨 방법이 유보임금법이다.

(4) 주관적평가방법

주관적 평가방법은 투입된 가사노동 시간의 양이나 시장임금을 근거로 한 시장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과는 달리 주부들 자신이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부 스스로 평가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환산해 보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평가방법은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양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산출에 의한 평가방법

이 방법은 산출물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그 산출물 단위에 대한 시장가격을 가계생산과 거의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기업에서는 얼마의 가격을 청구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세탁에 대한 비용을 세탁공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소의 세탁비로서 주부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록 사용된 시간만으로 생산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투입시간과 산출된 생산량 및 질적인 가치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국민계정의 측면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1985년 미국에서 조사한 직접산출물평가에 의한 가치가 노동투입물의 가치로 측정한 기존방법에 비해 44% 더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Fitzgerald, 1990).

3. 투입-산출에 의한 평가방법

이 방법은 가계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for unpaid household production) 개발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가계산출물을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로 나타내어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한다. 특히, 가계부문과 여타 경제부문간 또는 시장부문과 비시장부문간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 같은 국민경제 전반의 경제적 활동을 파악하는데 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투입에 의한 평가방법」과 「산출에 의한 평가방법」을 통합한 접근방법으로서 두 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출물접근에 의한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고, 더욱이 투입-산출에 의한 연구도 극히 미진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급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산출량뿐만 아니라 투입-산출표를 통한 분석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호주의 Ironmonger(2000)는 시장, 비시장부문의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투입물로 분류하는 동시에 가계산출물을 시장생산과 비시장생산으로 분류한 후, 이를 투입-산출표에 포함시킴으로써 가계부문과 시장경제를 완전히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시켜 총가계산출물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Ⅲ.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모형

1. 각 방법별 평가모형

무급노동가치의 평가방법은 투입접근방법과 산출접근방법이 있고, 각 접근 방법은 수량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무급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산출량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실현 가능한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투입접근법을 보편적으로 채택하여 각 무급생산활동에 투입된 시간에 적합한 임금률을 곱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투입접근법에 의한 평가모형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나,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으로 크게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형을 보다 세분시켜 네가지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들 네 모형에 임금가중치를 사용하여 통합평가모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1) 시장대체비용법

시장대체비용법(market replacement cost method)은 시장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가사일을 수행시키는 대신, 주부 스스로 가사 일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추계방법이다. 이 추정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개별기능대체비용법

개별기능대체비용법(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 : IFR)²⁾은 가사노동영역에 속하는 각각의 기능을 분류한 후, 각 기능에 해당되는 임금을 연령별로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즉 가사노동을 개별기능으로 나누어서

2) 다른 표현으로는 전문가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 specialist approach : "RC-S method")이라고도 한다.

각 개별기능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된 후, 이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임금을 연령별로 적용시켜 가사노동 가치를 추계한다. 이 추계방법의 기본요소는 가사노동의 기능에 따른 객관적인 대체임금이 과연 존재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WK_{IFR} = \sum_{j=1}^N \sum_{i=1}^M H_{ij} PK_j W_{ij}$$

단: UWK_{IFR} :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개별대체비용추정치

H_{ij} : i 기능의 j 주부(연령별 데모그래픽)의 무급노동시간

PK_j : 연령별로 무급노동에 참여한 주부의 수

W_{ij} : i 기능의 j 주부(연령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임금

특히 본 추계방법은 주부의 무급노동을 활동·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1992)』³⁾와 노동부에서 발표된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직종별, 연령별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2) 주부대체비용법

주부대체비용법(housekeeper replacement cost method : HRC)⁴⁾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하나의 가정관리직으로 간주하여 주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체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대체비용을 가정관리활동, 가족 보살피기 활동,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을 대상으로 각 활동에 상응하는 연령별 대체임금을 가중평균한 임금(W_{Hj})으로써 본 추계방법에 따라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 「표준직업분류」는 2000년에 신규 개정되었으므로 자료의 추계기간 동안의 직업분류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개정이전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4) 다른 표현으로는 종합적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 generalist approach : "RC-G method")이라고도 한다.

$$UWK_{HRC} = \sum_{j=1}^N H_j PK_j W_{Hj}$$

단, UWK_{HRC} :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주부대체비용추정치

H_j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text{즉, } H_j = \sum_{i=1}^M H_{ij}$$

PK_j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에 참여한 수

W_{Hj} : j 주부(연령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평균임금

이 방법은 주부(연령별)의 가사노동이 동일한 생산성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가사노동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주부가 무급노동에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유급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희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총기회비용법과 순기회비용법으로 구분된다.

1) 총기회비용법

총기회비용법(gross opportunity cost method : GOC)은 주부가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노동을 포기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이 한계임금률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WK_{GOC} = \sum_{j=1}^N H_j PK_j W_{GOCj}$$

단, UWK_{GOC} :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총기회비용 추정치

H_j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PK_j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에 참여한 수

W_{GOCj} : j 주부(연령별 데모그래픽)의 전체 평균기회비용

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실제로 총기회비용은 무급노동에 대한 총시간소비를 연령별 전체 평균시장임금율에 곱해서 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총기회비용법은 노동시장구조, 고용지위(employment status), 심리적 소득(psychic income), 개별노동자에 대한 시장임금율의 적합성에 따른 상이한 가치를 반영하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부들의 연령별로 총기회비용법에 의하여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2) 순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net opportunity cost method : NOC)은 주부들이 유급노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순기회비용으로써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순기회비용은 총기회비용에서 세금과 노동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임금소득에 해당되며, 그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WK_{NOC} = \sum_{j=1}^N H_j PK_j W_{NOCj}$$

단, UWA_{NOC} :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순기회비용추정치

H_j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PK_j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에 참여한 수

W_{NOCj} : j 주부(연령별 데모그래픽)의 평균 순기회비용

그러나, 순기회비용의 측정시 기본자료인 세금과 노동관련비용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우므로 순기회비용법에 의거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는 순기회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는 추계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

보(1999)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여성근로자들의 평균소득세를 추계한 후, 이를 총기회비용에서 제외시켜 순기회비용을 계측하였다.

(3) 통합대체비용법

통합대체비용법(integrated replacement cost method : I)은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가 기회비용법 혹은 개별기능대체비용법으로 추계할 경우, 추계치의 결과가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추정된 4가지 평가가치를 적용하여 통합 평가하는 모형이다. 즉,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UWK_I = \sum_{k=1}^4 \omega_k \cdot UW_k$$

단, ω_k 는 전체 추정방법별 임금가중치($\omega_1 + \omega_2 + \omega_3 + \omega_4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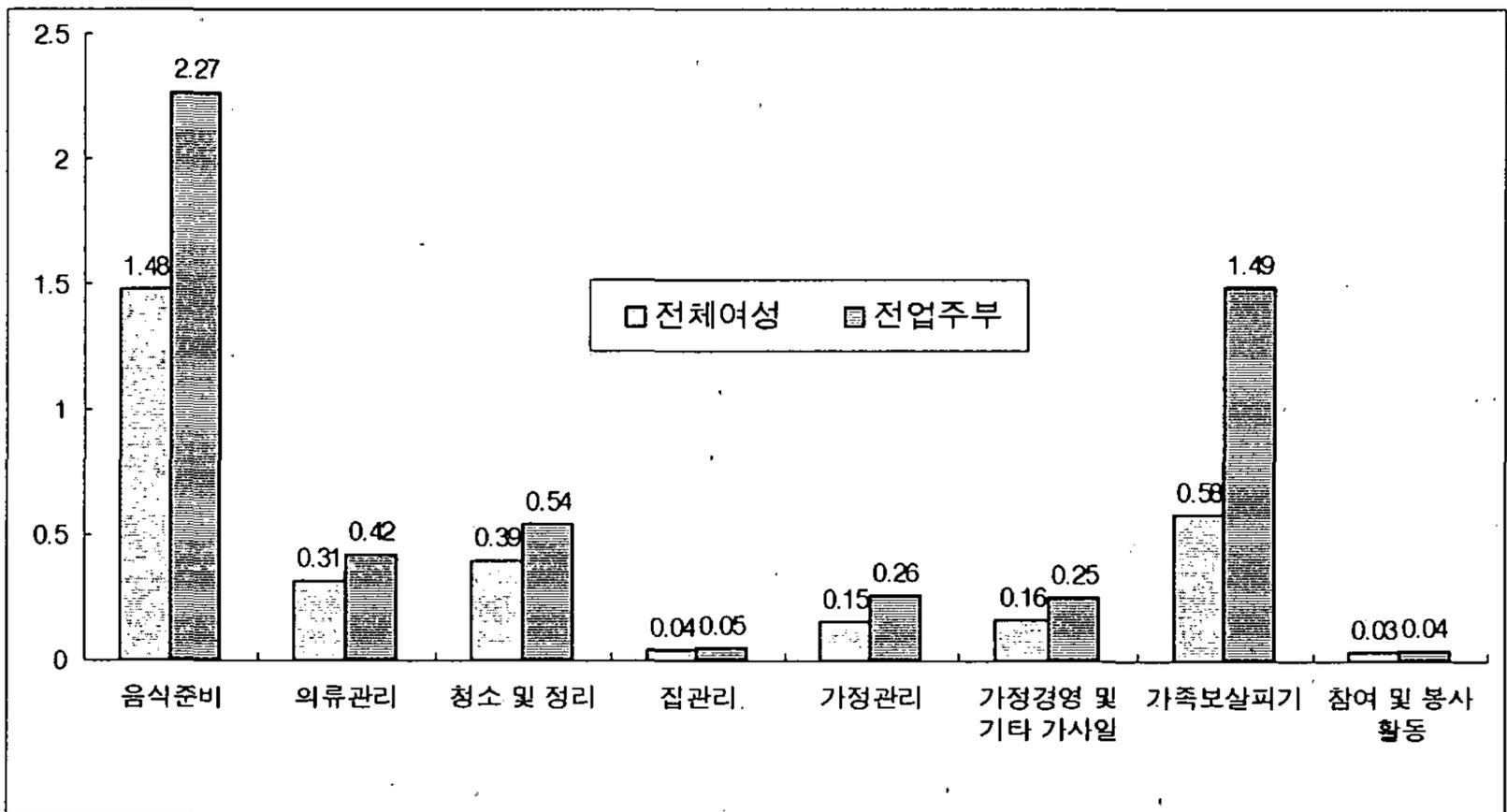
특히,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다른 어떤 추정방법 보다 직종별로 미시적인 임금자료가 추계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총기회비용법은 현재 무급노동자로서의 주부들이 앞으로 사회진출을 하여 유급노동자로 전환될 경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가지 평가기법에 의하여 추계된 가사노동가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평가방법에 사용된 평균임금이 전체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통합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2. 주부의 유형별 무급(가사)노동시간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은 20세 이상 전체여성들의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비교할 때 약 1.5배정도 더 길었으며, 사용시간의 편차가 큰 주부들의 주요가사활동에는 음식준비, 가족 보살피기,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업주부를 포함해서 전체여성들의 무급(가사)노동

참여시간이 낮은 활동들은 참여 및 봉사활동, 집관리, 가정경영 및 기타 가사일의 순으로 사용시간의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참여 및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며, 집관리, 가정경영 및 기타가사일은 가계내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전체여성과 전업주부의 활동유형별 무급노동시간 비교



다음으로 <표 1>의 전체여성과 주부의 활동유형별 무급노동시간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본 무급노동시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여성과 전업주부 모두가 가정관리활동에 전체무급노동시간의 2/3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서도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나머지의 시간은 가족 보살피기 활동에 사용하였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 돌보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전체여성에 비해 전업주부의 시간사용비중이 약 4.4% 높았다. 참여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여성이나 전업주부나 비슷한 비중으로 약 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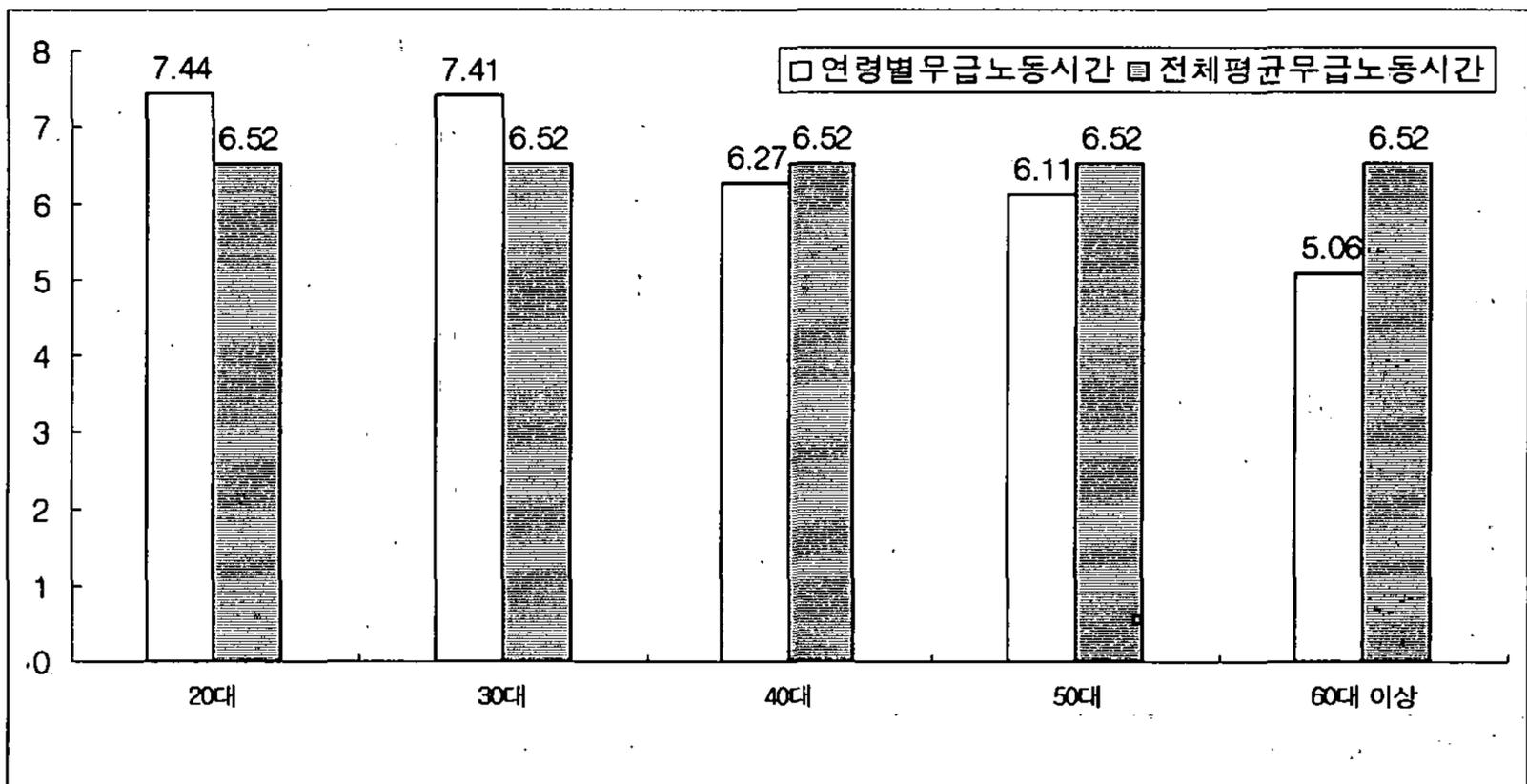
<표 1> 전체여성과 주부의 활동유형별 무급노동시간

(단위 : 시간, 분)

활동유형		전체	
중분류	소분류		주부
4 가정관리		3.32(77.7%)	4.59(72.6%)
41 음식준비 및 정리	411, 412	1.34(34.4%)	2.07(30.8%)
	413	0.14(5.1%)	0.20(4.9%)
42 의류관리	421	0.21(7.7%)	0.28(6.8%)
	422	0.05(1.8%)	0.07(1.7%)
	423, 424	0.03(1.1%)	0.04(1.0%)
	425	0.02(0.7%)	0.03(0.7%)
43 청소 및 정리	431	0.08(2.9%)	0.10(2.4%)
	432, 433	0.31(11.4%)	0.44(10.7%)
44 집관리	441	0.01(0.3%)	0.01(0.2%)
	442, 443	0.03(1.1%)	0.04(1.0%)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51, 452	0.15(5.5%)	0.25(6.1%)
	453	0.00(0.0%)	0.01(0.2%)
46 가정경영	461	0.01(0.3%)	0.02(0.5%)
	462	0.00(0.0%)	0.00(0.0%)
	463	0.02(0.7%)	0.03(0.7%)
49 기타			
84 가정관리 관련 이동	499, 841	0.13(4.8%)	0.20(4.9%)
5 가족 보살피기		0.58(21.2%)	1.49(26.4%)
5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11, 512	0.35(12.8%)	1.11(17.2%)
	519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21, 522	0.11(4.0%)	0.17(4.1%)
	523, 529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30, 540	0.12(4.4%)	0.20(4.9%)
55 그외 가족 보살피기	550, 851		
85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무급가사노동		4.30(98.9%)	6.48(99.0%)
6 참여 및 봉사활동		0.03(1.1%)	0.04(1.0%)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10	0.02(0.7%)	0.02(0.5%)
64 자원봉사	641	0.00(0.0%)	0.00(0.0%)
	642	0.00(0.0%)	0.00(0.0%)
	643	0.00(0.0%)	0.01(0.2%)
	644		
86 참여 및 봉사 관련 이동	649	0.01(0.3%)	0.01(0.2%)
	861		
무급노동		4.33(100.0)	6.52(100.0%)

다음으로 주부의 연령계층별 무급노동시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2>에 서처럼 전업주부의 연령별 무급노동시간은 전체여성의 평균무급노동시간과 비교해 볼 때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길었던 반면, 40대부터는 오히려 전체평균무급노동시간보다도 짧게 나타났다.

<그림 2> 전업주부의 연령계층별 무급노동시간 비교



그 내용을 활동유형별, 연령계층별 무급노동시간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가사활동에 포함되는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의 시간소요가 20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0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부수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가계부정리 및 가정 경영에 소요되는 시간도 30대를 정점으로 40대 이후 하락하는 추이가 관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핵가족화와 독립주거형태로의 주거특성으로 인해 가족규모가 감소하거나 40대 이후 자녀성장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가사업무분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업주부의 전체 무급노동시간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관리활동영역에서는 연령계층에 상관없이 식사준비(411)와 설거지 및 식후정리(412)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다음으로 집안 청소활동(432, 433); 세탁 및 세탁물 널기(421)에 시간사용량이 높았다. 가족 보살피기 활동

<표 2> 주부의 활동유형별, 연령계층별 무급노동시간

(단위 : 시간, 분)

활동유형		연령계층별					
중분류	소분류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 가정관리		4.59	4.28	5.00	5.34	5.18	4.22
41 음식준비 및 정리	411, 412	2.07	1.54	2.06	2.20	2.13	1.54
	413	0.20	0.11	0.18	0.25	0.24	0.26
42 의류관리	421	0.28	0.28	0.27	0.30	0.31	0.25
	422	0.07	0.07	0.07	0.07	0.07	0.07
	423, 424	0.04	0.03	0.04	0.06	0.05	0.03
	425	0.03	0.04	0.04	0.03	0.01	0.01
43 청소 및 정리	431	0.10	0.10	0.11	0.10	0.09	0.09
	432, 433	0.44	0.42	0.44	0.47	0.45	0.39
44 집관리	441	0.01	0.01	0.01	0.01	0.03	0.01
	442, 443	0.04	0.02	0.03	0.05	0.06	0.05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51, 452	0.25	0.22	0.26	0.28	0.27	0.16
	453	0.01	0.01	0.01	0.01	0.01	0.00
46 가정경영	461	0.02	0.02	0.02	0.02	0.01	0.01
	462	0.00	0.00	0.00	0.00	0.00	0.00
	463	0.03	0.03	0.03	0.04	0.03	0.01
49 기타							
84 가정관리 관련 이동	499, 841	0.20	0.19	0.21	0.23	0.22	0.14
5 가족 보살피기		1.49	3.15	2.37	0.46	0.48	0.41
5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11, 512	1.11	2.51	1.37	0.09	0.25	0.23
	519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21, 522	0.17	0.04	0.37	0.18	0.01	0.02
	523, 529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30, 540	0.20	0.21	0.23	0.19	0.22	0.16
55 그외 가족 보살피기	550, 851						
85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무급가사노동		6.48	7.43	7.37	6.20	6.06	5.04
6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1	0.04	0.08	0.05	0.02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10	0.02	0.01	0.02	0.05	0.02	0.01
64 자원봉사	641	0.00	0.00	0.00	0.01	0.00	0.00
	642	0.00	0.00	0.01	0.00	0.00	0.00
	643	0.01	0.00	0.00	0.01	0.02	0.00
	644						
86 참여 및 봉사 관련 이동	649	0.01	0.00	0.01	0.01	0.02	0.01
	861						
무급노동		6.52	7.44	7.41	6.27	6.11	5.06

에서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중 신체적 돌보기(511)와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512)의 시간사용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의 활동시간은 30대를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설거지 및 식후 관리(412), 세탁 및 세탁물 널기(421), 방·물품정리(431)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시간이 사용되었으며, 참여 및 봉사활동의 연령계층별 사용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높아졌으며, 40대를 정점으로 50대 이후부터는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610)의 활동이 주목할만 하며, 나머지의 활동시간은 연령계층별 시간사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측정

1.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평가

(1) 시장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

1)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앞의 모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급노동을 각 연령별, 각 활동유형별(4개 대분류, 17개 중분류, 40개 소분류) 소요시간에 각 활동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적용하여 연령별로 시간당 무급노동가치를 산출한 뒤 각 연령계층별 전업주부수로 환산하여 무급노동가치를 구한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분류상의 활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1993)』에서 찾아 대응직업을 매치(match)하고 그 대응직종의 평균임금을 추정하면 <표 3>과 같다. 즉 주부의 무급노동을 24개 유사활동유형별로 분류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응직종 소분류 임금을 적용하였다.⁵⁾ 그러나 <표 3>의 직종 소분류에 의하면, 적용직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같은 활동유형이 있다(예를 들면, 조리사와 가사관련 근로자(시간사용코드411-412), 학령전 교육교사(시간사용코드 511-512, 519)와 초등학교 교육교사(시간사용코드 521-523, 529)). 또한 무급노동활동 유형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확한 대응직종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시간사용코드 610, 641, 644, 649, 861). 따라서 향후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정밀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의 무급(가사)활동에 상응하는 소분류 임금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5) KSCO코드 세 자리에 해당하는 임금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0)」 원자료에서 추출하여 추정하였다.

<표 3>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연령별 대응직종 및 시간당 평균임금

(단위 : 원)

무급노동 활동	시간사용코드	KSCO 코드	KSCO 설명	활동별 시간당 임금
가정관리				5,212
식사준비 및 설거지	411-412	512	조리사	4,478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413	741	식품가공원	3,298
세탁 및 세탁물 널기	421	913	세탁원	3,593
옷정리	422	512	가사관련근로자	4,478
다림질 및 의류수선	423-424	913	세탁원	3,593
재봉, 뜨개질	425	743	직조원	3,274
방, 물품정리	431	512	가사관련근로자	4,478
집안청소 및 기타	432-433	914	건물관리인	3,996
가재도구, 집수리서비스 받기	441	712	대목수	4,944
세차 및 집관리	442-443	914	건물관리인	3,996
시장보기 및 쇼핑하기	451-452	512	가사관련근로자	4,478
내구재 구매관련행동	453	341	구매대리인	9,160
가계부 정리	461	412	회계사무원	7,330
가정계획	462	131	종합관리자	10,48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463	412	계수사무원	7,330
기타 가사일	499-841	512	가사관련근로자	4,478
가족 보살피기				7,940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11-512, 519	233	학령전 교육교사	8,398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521-523, 529	233	초등학교 교육교사	8,398
배우자 및 부모 보살피기	530, 540, 550, 851	323	간호준전문가	7,022
참여, 봉사활동				5,642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10	511	여객접대원	4,264
국가 및 지역행사 지원	641	511	여객접대원	4,264
자녀교육관련봉사	642	233	초등학교 교육교사	8,398
아동, 노인, 장애인관련	643	323	간호준전문가	7,022
재해지역, 기타자원봉사 및 이동	644, 649, 861	511	여객접대원	4,264

자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199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2000)』 원자료 이용.

가사노동에 상응하는 소분류 시간당 임금을 <표 4>에서처럼 활동유형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가족보살피기의 평균임금이 7,940원으로 가정관리활동의 평균임금 5,212원, 참여, 봉사활동의 5,642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직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643원 수준이었고, 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50대가

<표 4>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

(단위 : 원)

시간사용코드	KSCO 코드	무급노동 활동	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					
			평균임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정관리			5,212	5,329	5,231	5,297	5,729	4,265
411-412	512	식사준비 및 설거지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413	741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3,298	3,409	3,329	3,501	3,461	2,552
421	913	세탁 및 세탁물 널기	3,593	4,615	3,620	3,389	3,170	2,935
422	512	옷정리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423-424	913	다림질 및 의류수선	3,593	4,615	3,620	3,389	3,170	2,935
425	743	재봉, 뜨개질	3,274	3,538	3,522	3,280	3,001	2,578
431	512	방, 물품정리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432-433	914	집안청소 및 기타	3,996	5,541	2,930	4,351	4,173	3,817
441	712	가재도구, 집수리 서비스 받기	4,944	4,838	6,665	3,454	3,234	5,061
442-443	914	세차 및 집관리	3,996	5,541	2,930	4,351	4,173	3,817
451-452	512	시장보기 및 쇼핑하기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453	341	내구재 구매관련행동	9,160	7,913	9,575	11,396	12,391	2,457
461	412	가계부 정리	7,330	6,007	7,474	7,601	10,337	4,873
462	131	가정계획	10,483	9,212	9,333	10,774	11,510	13,529
463	412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7,330	6,007	7,474	7,601	10,337	4,873
499-841	512	기타 가사일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가족보살피기			7,940	6,157	7,624	9,302	9,051	7,720
511-512, 519	233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8,398	5,682	7,532	9,962	10,812	9,049
521-523, 529	233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8,398	5,682	7,532	9,962	10,812	9,049
530, 540, 550, 851	323	배우자 및 부모 보살피기	7,022	7,106	7,809	7,983	5,528	5,061
무급가사노동			5,643	5,460	5,609	5,929	6,253	4,811
참여, 봉사활동			5,642	4,856	5,821	5,868	5,682	5,859
610	51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4,264	3,830	4,589	3,799	4,023	5,061
641	511	국가 및 지역행사 지원	4,264	3,830	4,589	3,799	4,023	5,061
642	233	자녀교육관련봉사	8,398	5,682	7,532	9,962	10,812	9,049
643	323	아동, 노인, 장애인관련	7,022	7,106	7,809	7,983	5,528	5,061
644, 649, 861	511	재해지역, 기타자원봉사 및 이동	4,264	3,830	4,589	3,799	4,023	5,061
무급노동			5,643	5,334	5,653	5,916	6,134	5,029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2000)」 원자료 이용.

6,134원으로서 가장 높고, 40대, 30대, 2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추계되었다. 전체 연령계층에서 시간당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활동유형으로는 가정계획, 내구재 구매관련 행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및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순서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시간당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활동에는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재봉, 뜨개질, 바느질, 다림질, 의류수선, 세탁이 포함된다.

또한, 주부의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있어서 기본변수인 연령별 가사노동참여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의 '가사·육아'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유배우 여자인구(1999년 5,315천명)에 「생활시간조사」대상 표본의 연령별 주부가사노동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5>로 요약된다.

<표 5>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참여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주부수(명)	950,322	1,766,175	1,114,024	796,187	688,292	5,315,000
비율(%)	17.88	33.23	20.96	14.98	12.95	100.0

주부의 가사노동 참여수는 30대가 약 1/3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40대, 2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서였다. 주부의 무급노동이 대응직종에 대한 시간당 평균임금은 가족보살피기의 평균임금이 가정관리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참여비율을 고려한 활동유형별, 연령별 평가액은 <표 6>과 같다.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총가치는 연간 66.7조원으로서 GDP대비 13.8%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비중은 무급노동의 연간 총가치 67.4조원으로서 GDP 대비 13.9%와 비교하면 참여 및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무급노동의 경우가 약 0.1%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무급가사노동이나 무급노동의 경우 모두 30대가 각각 26.4조원, 26.7조원으로서 GDP 대비 약 5.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고, 총가치의 약 40%를 점유하였다.

<표 6>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평가액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4,093.20 (21.11)	26,423.89 (39.58)	12,413.58 (18.60)	8,595.59 (12.88)	5,228.87 (7.83)	66,755.13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29,767	14,961,091	11,141,118	10,795,118	7,599,736	12,559,761
GDP 대비 비율(%)	2.92	5.47	2.57	1.78	1.08	13.82

B. 무급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4,123.86 (20.95)	26,662.80 (39.56)	12,637.92 (18.75)	8,712.15 (12.93)	5,267.01 (7.81)	67,403.24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62,026	15,096,075	11,342,466	10,941,508	7,655,167	12,681,701
GDP 대비 비율(%)	2.93	5.52	2.62	1.80	1.09	13.96

다음으로 <표 7>의 활동유형별 평가가치 비중은 가정관리가 61.33%, 가족 보살피기가 37.71%, 참여 및 봉사활동은 1% 미만이었다. 소분류 활동유형의 경우, 식사준비 및 설거지 무급가사활동의 가치가 27.17%, 미취학아동 돌보기가 24.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주부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

주부대체비용법은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H_j), 연령별 무급노동참여 주부수(PK_j) 및 연령별 주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평균임금(W_{Hj})을 사용하여 무급노동가치를 산출한다. 이 추계방법에서 기본변수인 연령별 주부대체 임금(W_{Hj})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로, 주부대체임금을

<표 7>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활동유형별, 연령별 평가액

(단위 : 원)

활동유형 소분류	연령계층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구성비 %)
가정관리	7,914,885	7,738,640	8,592,064	8,343,145	5,715,530	7,777,729(61.33)
식사준비 및 설거지	3,329,748	3,566,155	3,702,051	3,671,156	2,620,401	3,445,675(27.17)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226,337	371,767	541,701	511,157	407,490	406,895(3.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	778,649	598,598	610,838	597,043	451,726	614,112(4.84)
옷정리	207,109	198,807	192,394	188,918	150,454	191,206(1.51)
다림질 및 의류수선	85,923	89,146	131,732	100,587	55,214	94,819(0.75)
재봉, 뜨개질	90,533	83,809	63,892	24,096	8,569	62,150(0.50)
방, 물품정리	291,769	322,601	263,250	251,169	205,602	278,799(2.20)
집안청소 및 기타	1,426,084	786,512	1,251,810	1,149,681	907,548	1,068,487(8.43)
가재도구, 집수리 서비스 받기	21,371	37,046	24,138	55,526	35,301	34,080(0.27)
세차 및 집관리	64,339	57,530	143,146	145,903	114,552	97,316(0.77)
시장보기 및 쇼핑하기	653,829	738,269	739,731	738,602	358,466	674,362(5.32)
내구재 구매관련행동	24,141	40,014	64,580	75,463	3,123	42,861(0.34)
가계부 정리	62,689	90,467	80,593	43,185	15,495	66,642(0.53)
가정계획	2,613	10,973	5,234	1,693	27,423	9,014(0.00071)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102,689	150,442	166,238	184,389	27,107	134,334.87(1.06)
기타 가사일	547,064	596,504	610,736	604,576	327,059	556,977(4.39)
가족보살피기	6,914,882	7,222,450	2,549,054	2,451,973	1,884,206	4,782,032(37.7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897,371	4,462,490	533,678	1,665,392	1,241,754	3,059,465(24.13)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128,817	1,689,665	1,101,184	55,723	135,615	841,259(6.63)
배우자 및 부모 보살피기	888,694	1,070,296	914,192	730,858	506,837	881,308(6.95)
무급가사노동	14,829,767	14,961,091	11,141,118	10,795,118	7,599,736	12,559,761(99.04)
참여 및 봉사활동	32,259	134,984	201,348	146,390	55,431	121,939(0.96)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20,895	57,106	106,584	38,673	24,147	53,976(0.0043)
국가 및 지역행사 지원	0	2,564	14,573	0	0	3,907(0.00031)
자녀교육관련봉사	917	41,453	9,657	1,859	0	16,242(0.128)
아동, 노인, 장애인관련	5,807	15,618	39,178	53,193	12,012	23,965(0.189)
재해지역, 기타자원 봉사 및 이동	4,640	18,243	31,357	52,665	19,272	23,850(0.188)
무급노동	14,862,026	15,096,075	11,342,466	10,941,508	7,655,167	12,681,701(100)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2000)」 원자료 이용.

주부의 무급노동인 가정관리, 가족살피기 그리고 참여 및 봉사활동의 평균 임금을 전체 주부의 총무급노동시간 대 각 유형별 무급노동시간 비율을 가중치로써 가중평균 하였다(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법). 그 결과 연령별 주부대체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연령별 시간당 주부대체비용 I

(단위 :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대체비용
대체비용 (W_{Hj})	5,537.8	5,853.7	6,334.6	6,584.5	5,170.6	5,919.0

주 : 전체대체비용은 연령별 대체비용을 연령별 전업주부수의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비용임.

주부대체비용은 50대까지는 상승하다가 60대 이상부터는 하락하였으며, 전체 주부의 대체비용은 시간당 5,919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8>의 가중평균한 주부대체비용을 보면, 20대의 대체비용이 5,537.8원으로 40, 50대의 대체비용보다 낮으므로 20대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시간사용 조사자료 참조).

둘째로, 기존의 연구관례와 같이 가사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삼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1993)』 기준 KSCO코드 512(51211), 가사 및 관련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주부대체임금으로 사용하였다(가사평균임금법). 가사 및 관련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표 9>와 같이 4,478원으로 추계되었고, 연령별 임금은 20대가 4,805.1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50대, 40대, 60대 이상의 순서였다.

위의 두 접근방법에 의한 주부대체임금을 비교하면, 주부 무급노동 평균임금법에 의한 주부대체임금이 가사평균임금법의 주부대체임금보다 약 32% 높게 추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접근방법에 의하여 주부대체비용법에 의한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표 9> 연령별 시간당 주부대체비용 II

(단위 :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대체비용
대체비용 (512직종)	4,805.1	4,646.0	4,331.6	4,540.1	3,763.1	4,478.0

우선, 주부대체비용법 I (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법)에 의한 주부들의 무급노동가치 총평가액은 <표 10>에서 처럼 총 78.9조원, 1인당 평가가치는 1,48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30, 40대의 무급노동가치 평가액은 약 28.9조원과 약 17조원, 구성비는 36.7%, 21.1%로 각각 나타나서 전체의 57.8%인 45.5조원 정도를 점하고 있다. 1인당 평가가치를 보면, 전체 평가액과 마찬가지로 30대의 1인당 평가가치가 1,640만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40대의 경우, 전체 평가가치의 순위와 다르게 20대의 1,564만원보다 낮은 1,49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주부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총평가액은 78.1조원, 1인당 연간 평가가치는 1,470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령별로는 무급노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30, 40대의 순으로 전체의 57.5%인 44.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평가가치를 보면, 30대가 1,626만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으며, 40대의 경우에는 무급노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20대의 1,561만원보다도 낮은 1,464만원으로 전체 연령의 1인당 연간평균가치인 1,470만원보다도 약간 낮았다. GDP 대비 비중은 총평가액의 경우 16.3%이며 30대, 40대, 20대 비중이 각각 6.0%, 3.4%, 3.1% 순이었다.

따라서 주부대체비용법 I (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법)을 무급가사노동과 무급노동으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총평가액 측면에서는 약 8조원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인당 가치도 약 15만원 낮았으며, GDP대 비율도 약 0.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대체비용법 II (가사평균임금법)에 의한 전업주부의 무급노동가치 총평가액은 60.2조원으로서 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 31% 낮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3.0조원, 20대가 12.9조원, 40대가 11.4조원, 50대가 8.2조원, 60대 이상이 4.8조원 순으로 나타났고, GDP 대비 12.5%를 차지하였다.

<표 10> 주부대체비용법 I 의 평가액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4,837.07 (18.99)	28,718.80 (36.77)	16,313.90 (20.88)	11,677.30 (14.95)	6,566.17 (8.41)	78,113.25 (100.00)
1인당 평가액(원)	15,612,519	16,260,456	14,641,638	14,665,411	9,543,393	14,696,755
GDP 대비(%)	3.07	5.95	3.38	2.42	1.36	16.18

B. 무급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4,859.79 (18.83)	28,970.40 (36.72)	16,627.21 (21.07)	11,832.35 (15.00)	6,613.53 (8.38)	78,903.29 (100.00)
1인당 평가액(원)	15,636,428	16,402,912	14,922,835	14,860,130	9,612,226	14,845,398
GDP 대비(%)	3.08	6.00	3.44	2.45	1.37	16.34

또한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도 59.6조원으로 주부무급가사노동 평균임금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 31% 낮게 추정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이었다. GDP대비 총평가액의 비중은 약 12.4%로서 무급노동전체를 추정한 경우보다 약 0.1% 낮았다. 이 격차는 주부대체비용법 I (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법)경우와 유사하였다.

<표 11> 주부대체비용법 II의 평가액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2,858.93 (21.57)	22,792.89 (38.22)	11,147.70 (18.70)	8,041.92 (13.49)	4,784.84 (8.02)	59,626.28 (100.00)
1인당 평가액(원)	13,530,994	12,905,232	10,004,997	10,099,768	6,954,376	11,218,491
GDP 대비(%)	2.66	4.72	2.31	1.67	0.99	12.35

B. 무급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2,893.85 (21.41)	22,993.79 (38.18)	11,369.81 (18.88)	8,159.42 (13.55)	4,813.20 (7.99)	60,230.07 (100.0)
1인당 평가액(원)	13,567,731	13,018,983	10,204,348	10,247,331	6,995,589	11,331,919
GDP 대비(%)	2.67	4.76	2.36	1.70	1.00	12.48

(2)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

1)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

총기회비용법은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H_j), 연령별 무급노동참여주부 수(PK_j) 및 연령별 총기회비용을 적용하여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한다.

연령별 총기회비용은 여성이 사회진출하여 얻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여성의 전직중 연령별 평균임금(『1999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노동부

원자료 이용)을 사용하였다. 연령별 시간당 총기회비용은 <표 13>에서와 같이 30대가 6,331.1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 2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각 연령대별 시간당 총기회비용이 가사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사용한 주부대체비용Ⅱ 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부의 무급노동평균임금법을 기초로 한 주부대체비용Ⅰ 보다는 시간당 총기회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표 12> 총기회비용법의 평가액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3,611.51 (19.29)	31,069.32 (44.05)	12,583.00 (17.84)	7,531.10 (10.68)	5,742.83 (8.14)	70,537.77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22,906	17,591,313	11,293,178	9,458,231	8,346,733	13,217,453
GDP 대비(%)	2.82	6.43	2.61	1.56	1.19	14.61

B. 무급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3,648.47 (19.16)	31,343.18 (43.99)	12,833.72 (18.01)	7,641.13 (10.73)	5,776.86 (8.11)	71,243.36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61,794	17,746,369	11,518,196	9,596,420	8,396,198	13,404,072
GDP 대비(%)	2.83	6.49	2.66	1.58	1.20	14.76

총기회비용법에 의하면, 주부의 무급노동의 총가치는 약 71.2조원, 1인당 평가가치는 1,34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30대 전업주부의 무급노동가치 평가액이 전체 평가액의 44.0%에 이르러 40대 전업주부의 평가액까지 합치면 구성비는 62.0%, 화폐가치로는 44.1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20대 13.6조원(구성비 19.2%),

50대 7.6조원(구성비 10.7%) 순이었고, 60세 이상은 구성비가 8.1%로서 현저하게 낮았다. 1인당 평가가치는 30대가 가장 높은 1,775만원으로 추계되었고, 주부대체비용법 추정결과와 유사하게 20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GDP 대비 비중을 보면, 총평가액은 14.8%로 추정되었고, 30대 6.5%, 20, 40대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가장 낮았다.

한편,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은 70.5조원으로 무급노동의 총평가액에 비해 약 1% 낮게 평가되었으며, 무급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대의 가사노동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50대, 60대 이상 주부의 가사노동평가액은 전체 13.3조원으로서 20대의 13.6조원보다도 낮았으며 그 비중도 18.8%로 20대의 전체구성비인 19.3%보다 0.5% 낮았다.

그 이유는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평가가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참여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50대 이후로는 여성노동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순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은 총기회비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총기회비용 대신에 순기회비용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총기회비용에서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기초로 하여 추계한 연령별 평균소득세를 제하여 순기회비용을 구했다.

연령별 시간당 총기회비용, 소득세 및 순기회비용은 <표 13>과 같다. 시간당 순기회비용 역시 30대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연령별 시간당 기회비용

(단위 :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기회비용	5,086.3	6,333.1	4,889.3	4,252.2	4,516.5
소득세	10.6	19.5	25.9	8.1	12.1
순기회비용	5,075.7	6,313.6	4,863.4	4,244.1	4,504.4

주 : 소득세 = 연령별 평균소득세 ÷ 365 ÷ 연령별 1일 근무시간

순기회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무급노동의 총가치평가액은 <표 14>에서 처럼 약 71조원, 1인당 평가가치는 1,335만원으로 나타났다. 순기회비용법 역시 30대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의 총평가액이 31.2조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대의 13.6조원, 40대의 12.7조원 순이었다. 1인당 평가가치는 30대 1,769만원, 20대 1,433만원, 40대 1,144만원 순으로 역시 20대가 40대 전업주부의 1인당 평가가치보다는 높게 추정되었다. GDP 대비 비중 역시 1인당 평가가치 순위와 같게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은 30대 6.5%, 20대 2.8%, 40대 2.6% 순이었으며, 총평가액은 GDP의 14.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은 70조원, 1인당 평가가치는 1, 1인당 평가가치는 1,335만원으로 나타났다. 순기회비용법 역시 30대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의 총평가액이 31.2조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대의 13.6조원, 40대의 12.7조원 순이었다. 1인당 평가가치는 30대 1,769만원, 20대 1,433만원, 40대 1,144만원 순으로 역시 20대가 40대 전업주부의 1인당 평가가치보다는 높게 추정되었다. GDP 대비 비중 역시 1인당 평가가치 순위와 같게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은 30대 6.5%, 20대 2.8%, 40대 2.6% 순이었으며, 총평가액은 GDP의 14.6%를 차지했다.

(3) 통합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

통합비용법은 위에서 추계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각 평가방법에서 사용한 평균임금율의 상대적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였다(<표 15>참조). 임금가중치 I 은 주부대체비용을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평균임금법에 의하여 추계된 시간당 평균임금을, 임금가중치 II는 주부대체비용을 시간당 가사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시간당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임금가중치는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이 비교적 높았으며, 가중치 편차는 0.01~0.06으로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표 14> 순기회비용법의 평가액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3,582.24 (19.32)	30,969.31 (44.07)	12,494.52 (17.78)	7,511.23 (10.69)	5,718.27 (8.14)	70,275.56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01,166	16,527,731	12,152,263	11,227,370	8,471,425	13,464,811
GDP 대비(%)	2.81	6.42	2.59	1.56	1.18	14.56

B. 무급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3,619.19 (19.19)	31,243.16 (44.07)	12,745.24 (17.96)	7,621.26 (10.74)	5,752.30 (8.10)	70,981.15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30,989	17,689,740	11,438,783	9,571,464	8,360,497	13,354,740
GDP 대비(%)	2.82	6.47	2.64	1.58	1.19	14.70

<표 15> 임금가중치 I, II

	개별기능체비용	주부대체비용	총기회비용	순기회비용
가중치 I	0.2608	0.2739	0.2330	0.2323
가중치 II	0.2792	0.2227	0.2494	0.2487

주부 무급(가사)노동의 평균임금을 사용한 통합비용법 I 에 의하면, <표 16>에서와 같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은 72.3조원으로서 GDP의 15%를 차지하였으며, 1인당 평가가치는 1,36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30대의 총평가액과 1인당 평가가치는 각각 30.0조원과 1,667만원이었고, 20대와 40대는 총평가액의 경우 14조원 수준에서 비슷하게 추정되었지만, 1인당 평가가치는 20대가 40대에 비하여 약 250만원 정도 많은 1,48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6> 통합비용법 I의 평가액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4,066.02 (19.65)	29,190.85 (40.80)	13,540.21 (18.92)	8,939.77 (12.49)	5,828.62 (8.14)	71,565.47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01,166	16,527,731	12,152,263	11,227,370	8,471,425	13,464,811
GDP 대비(%)	2.91	6.05	2.80	1.85	1.21	14.82

B. 무급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4,097.43 (19.50)	29,449.37 (40.74)	13,801.19 (19.09)	9,063.84 (12.54)	5,867.37 (8.12)	72,279.21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34,222	16,674,102	12,386,497	11,383,182	8,527,750	13,598,917
GDP 대비(%)	2.92	6.10	2.86	1.88	1.15	14.97

연령별로 본 총평가액의 GDP 대비 비중은 30대가 6.1%, 20, 40대는 2.9%로 거의 비슷하였다. 역시 60세 이상의 전업주부층이 총평가액, 1인당 평가가치, 그리고 GDP 대비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6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주부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연령에 해당하며, 가계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무급노동으로 대체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무급가사노동의 경우로 구분해서 보더라도 그 결과는 무급노동의 경우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 71.6조원으로 GDP의 약 14.8%차지 하였으며, 1인당 평가액도 1,346만원으로 무급노동 1인당 평가액보다 약 14만원정도 낮게 추계되었다. GDP대비 비중도 30대, 20대, 40대순으로 유사하였으나, 60대 연령계층의 총평가액의 점유율이 무급가사노동의 경우에는 무급노동의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부의 가사 및 관련여성근로자 평균임금(512)을 사용한 통합비용법Ⅱ에 의한 총평가액은 <표 17>에서처럼 무급노동의 총평가액은 67.7조원으로서 GDP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역시 30대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28.2조원으로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가액은 1,594만원, GDP의 5.8%를 점했다. 또한 무급가사노동의 경우로 구분해서 보면, 총평가액은 67.0조원으로 약 0.7조원 낮게 추정되었으며 GDP대비 점유율도 13.9%로 무급노동의 경우보다 0.1%정도 낮았다. 연령별 1인당 평가액의 크기도 30대, 20대, 40대순이었으며, 50대 이상의 주부들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결과, 주부의 가사 및 관련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사용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통합평가가치는 무급(가사)노동 평균임금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 6.84%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통합비용법Ⅱ의 평가액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3,571.10 (20.26)	27,904.44 (41.66)	12,194.44 (18.20)	7,937.08 (11.85)	5,379.90 (8.03)	66,986.58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280,382	15,799,370	10,944,098	9,968,106	7,819,240	12,603,308
GDP 대비(%)	2.81	5.78	2.53	1.64	1.11	13.88

B. 무급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액 (10억원)	13,605.84 (20.11)	28,152.15 (41.61)	12,431.04 (18.37)	8,050.60 (11.90)	5,413.81 (8.00)	67,653.45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16,941	15,939,624	11,156,793	10,110,672	7,868,532	12,728,623
GDP 대비(%)	2.82	5.83	2.58	1.67	1.12	14.01

2. 주부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 비교

1999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 평가결과에 의하면,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67.4조원, 주부대체비용법 I 은 78.9조원, 주부대체비용법 II는 60.2조원, 순기회비용법은 71조원, 총기회비용법은 71.2조원으로 추계되었고, 이들 다섯가지 방법에 의한 평가가치를 가중평균한 통합비용법 I 은 72.3조원, 통합비용법 II는 67.7조원으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평가되었다. 주부 1인당 무급노동가치는 평가방법에 따라 1,268만원에서 1,485만원으로 환산되었고, 통합비용법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결과 1,273만원 또는 1,36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주부무급노동의 1인당 월별 평가액은 94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추계되었고, 통합비용법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월별평가액은 106만원 또는 113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부대체비용법 I 또는 총기회비용법의 경우가 각각 16.3% 또는 14.8%로 가장 높았고, 주부대체비용법 II의 경우 약 12.5%로 가장 낮았다. 각 방법에 의하여 추계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가중평균한 통합비용법에 의한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GDP 비중은 14%내지 15%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방법의 추계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GDP에서 12.5% 내지 16.3%의 범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의 추계결과(1996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주부무급(가사)노동의 GDP 대비 비율이 약 3%~7% 정도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는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비하여 0.1%~0.2% 낮았으나, 연령대별 추이와 각 평가방법별 평가액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999년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는 GDP에서 약 15%(각 개별평가방법의 통합치)를 차지하는 72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주부 1인당 연간 무급노동가치는 약 1,360만원, 월별 무급노동가치는 113만원에 해당된다.

<표 18> 각 방법별 주부의 노동가치 평가액 종합표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개별 가능 대체 비용법	총평가액 (10억원)	14,093.20 (21.11)	26,423.89 (39.58)	12,413.58 (18.60)	8,595.59 (12.88)	5,228.87 (7.83)	66,755.13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29,767	14,961,091	11,141,118	10,795,118	7,599,736	12,559,761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235,814	1,246,758	928,427	899,593	633,311	1,046,647
	GDP 대비	2.92	5.47	2.57	1.78	1.08	13.82
주부 대체 비용법 I	총평가액 (10억원)	14,837.07 (18.99)	28,718.80 (36.77)	16,313.90 (20.88)	11,677.30 (14.95)	6,566.17 (8.41)	78,113.25 (100.00)
	1인당 평가액(원)	15,612,519	16,260,456	14,641,638	14,665,411	9,543,393	14,696,755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301,043	1,355,038	1,220,137	1,222,118	795,283	1,224,730
	GDP 대비	3.07	5.95	3.38	2.42	1.36	16.18
주부 대체 비용법 II	총평가액 (10억원)	12,858.93 (21.57)	22,792.89 (38.22)	11,147.70 (18.70)	8,041.92 (13.49)	4,784.84 (8.02)	59,626.28 (100.00)
	1인당 평가액(원)	13,530,994	12,905,232	10,004,997	10,099,768	6,954,376	11,218,491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27,583	1,075,436	833,750	841,647	579,531	934,874
	GDP 대비	2.66	4.72	2.31	1.67	0.99	12.35
총기회비 용법	총평가액 (10억원)	13,611.51 (19.29)	31,069.32 (44.05)	12,583.00 (17.84)	7,531.10 (10.68)	5,742.83 (8.14)	70,537.77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22,906	17,591,313	11,293,178	9,458,231	8,346,733	13,217,453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3,576	1,465,943	941,098	788,186	695,561	1,101,454
	GDP 대비	2.82	6.43	2.61	1.56	1.19	14.61
순기회비 용법	총평가액 (10억원)	13,582.24 (19.32)	30,969.31 (44.07)	12,494.52 (17.78)	7,511.23 (10.69)	5,718.27 (8.14)	70,275.56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30,989	17,689,740	11,438,783	9,571,464	8,360,497	13,354,740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1,008	1,461,224	934,480	786,106	692,586	1,101,843
	GDP 대비	2.81	6.42	2.59	1.56	1.18	14.56
통합 비용법 I	총평가액 (10억원)	14,066.02 (19.65)	29,190.85 (40.80)	13,540.21 (18.92)	8,939.77 (12.49)	5,828.62 (8.14)	71,565.47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01,166	16,527,731	12,152,263	11,227,370	8,471,425	13,464,811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233,431	1,377,311	1,012,689	935,614	705,952	1,122,068
	GDP 대비	2.91	6.05	2.80	1.85	1.21	14.82
통합 비용법 II	총평가액 (10억원)	13,571.10 (20.26)	27,904.44 (41.66)	12,194.44 (18.20)	7,937.08 (11.85)	5,379.90 (8.03)	66,986.58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280,382	15,799,370	10,944,098	9,968,106	7,819,240	12,603,308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0,032	1,316,614	912,008	830,676	651,603	1,050,276
	GDP 대비	2.81	5.78	2.53	1.64	1.11	1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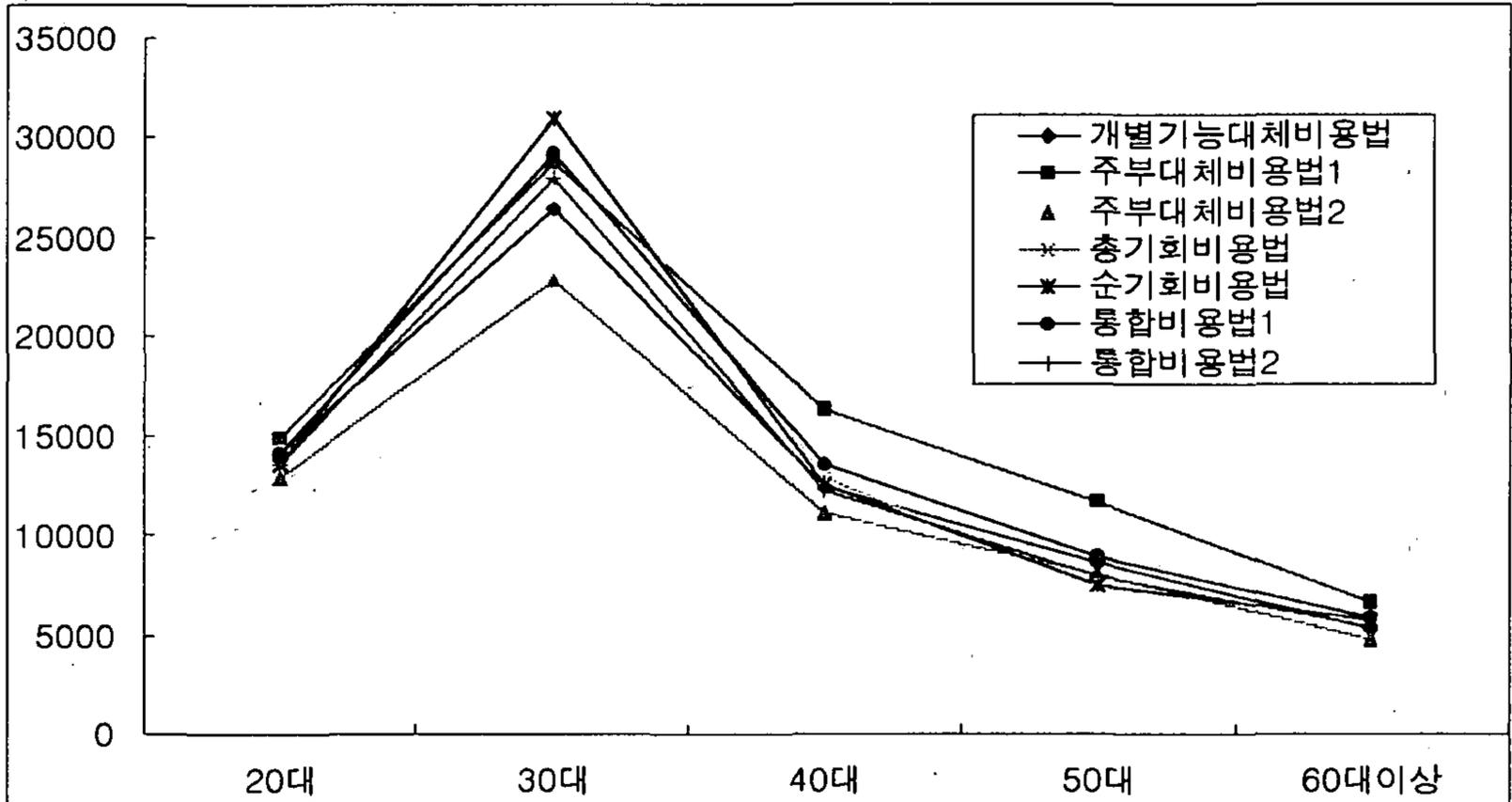
B. 무급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개별 가능 대체 비용법	총평가액 (10억원)	14,123.86 (20.95)	26,662.80 (39.56)	12,637.92 (18.75)	8,712.15 (12.93)	5,267.01 (7.81)	67,403.24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62,026	15,096,075	11,342,466	10,941,508	7,655,167	12,681,701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238,502	1,258,006	945,206	911,792	637,931	1,056,808
	GDP 대비	2.93	5.52	2.62	1.80	1.09	13.96
주부 대체 비용법 I	총평가액 (10억원)	14,859.79 (18.83)	28,970.40 (36.72)	16,627.21 (21.07)	11,832.35 (15.00)	6,613.53 (8.38)	78,903.29 (100.00)
	1인당 평가액(원)	15,636,428	16,402,912	14,922,835	14,860,130	9,612,226	14,845,398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303,036	1,366,909	1,243,570	1,238,344	801,018	1,237,117
	GDP 대비	3.08	6.00	3.44	2.45	1.37	16.34
주부 대체 비용법 II	총평가액 (10억원)	12,893.85 (21.41)	22,993.79 (38.18)	11,369.81 (21.1)	8,159.42 (18.88)	4,813.20 (7.99)	60,230.07 (100.00)
	1인당 평가액(원)	13,567,731	13,018,983	10,204,348	10,247,331	6,995,589	11,331,919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30,644	1,084,915	850,362	853,944	582,966	944,327
	GDP 대비	2.67	4.76	2.36	1.68	1.00	12.48
총기회비 용법	총평가액 (10억원)	13,648.47 (19.16)	31,343.18 (43.99)	12,833.72 (18.13)	7,641.13 (10.73)	5,776.86 (8.11)	71,243.36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61,794	17,746,369	11,518,196	9,596,420	8,396,198	13,404,072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6,816	1,478,864	959,850	799,702	699,683	1,117,006
	GDP 대비	2.83	6.49	2.66	1.58	1.19	14.76
순기회비 용법	총평가액 (10억원)	13,619.19 (19.19)	31,243.16 (44.02)	12,745.24 (18.01)	7,621.26 (10.73)	5,752.30 (8.11)	70,981.15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30,989	17,689,740	11,438,783	9,571,464	8,360,497	13,354,740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4,249	1,474,145	953,232	797,622	696,708	1,112,895
	GDP 대비	2.82	6.47	2.64	1.58	1.19	14.70
통합 비용법 I	총평가액 (10억원)	14,097.43 (19.50)	29,449.37 (40.74)	13,801.19 (19.09)	9,063.84 (12.54)	5,867.37 (8.12)	72,279.21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834,222	16,674,102	12,386,497	11,383,182	8,527,750	13,598,917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236,185	1,389,509	1,032,208	948,599	710,646	1,133,243
	GDP 대비	2.92	6.10	2.86	1.88	1.21	14.97
통합 비용법 II	총평가액 (10억원)	13,605.84 (20.11)	28,152.15 (41.61)	12,431.04 (18.37)	8,050.60 (11.90)	5,413.81 (8.00)	67,653.45 (100.00)
	1인당 평가액(원)	14,316,941	15,939,624	11,156,793	10,110,672	7,868,532	12,728,623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3,078	1,328,302	929,733	842,556	655,711	1,060,719
	GDP 대비	2.82	5.83	2.57	1.67	1.12	14.01

<그림 3> 전업주부의 연령별 총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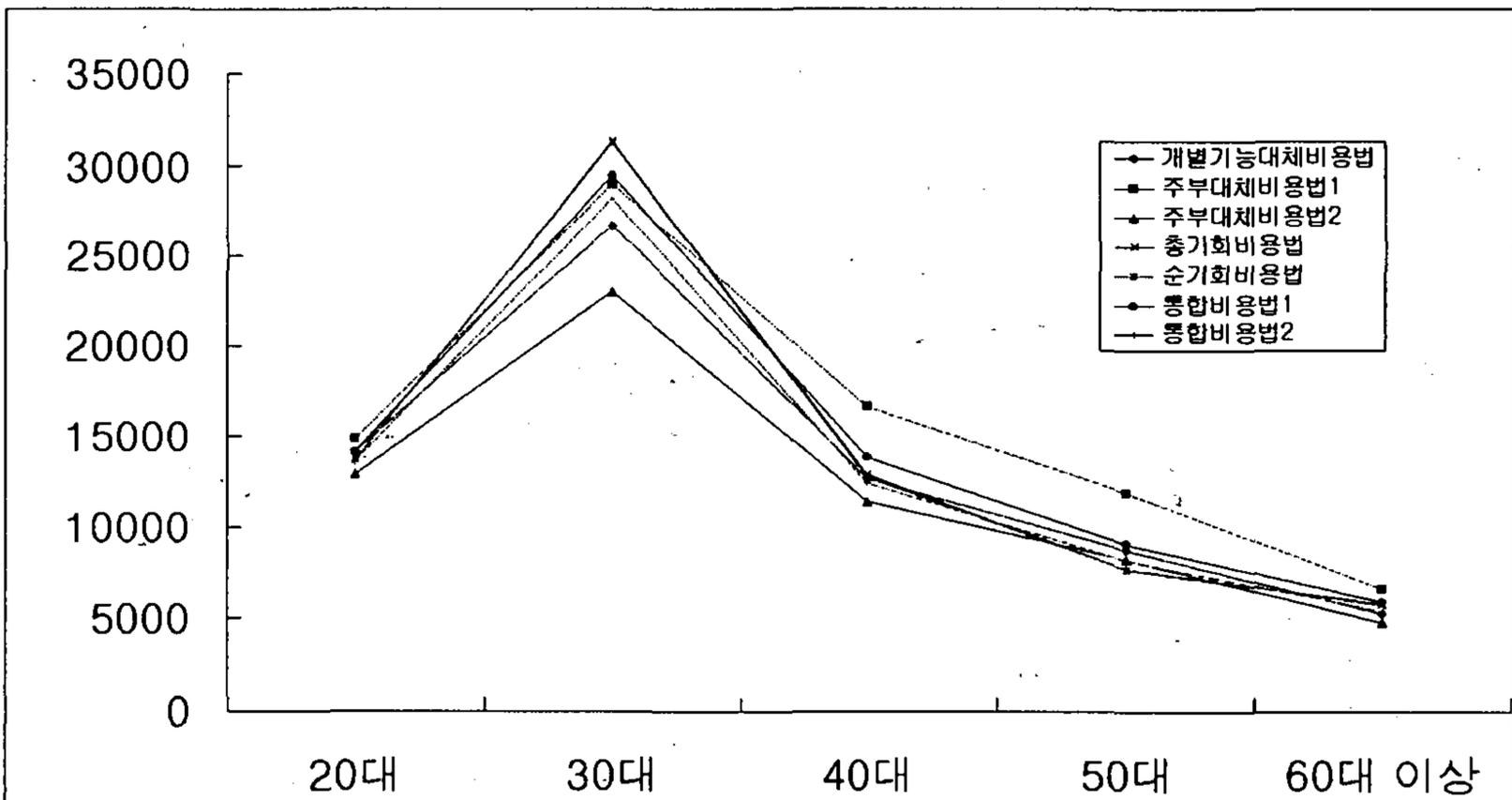
A. 무급가사노동

(단위 : 10억원)



B. 무급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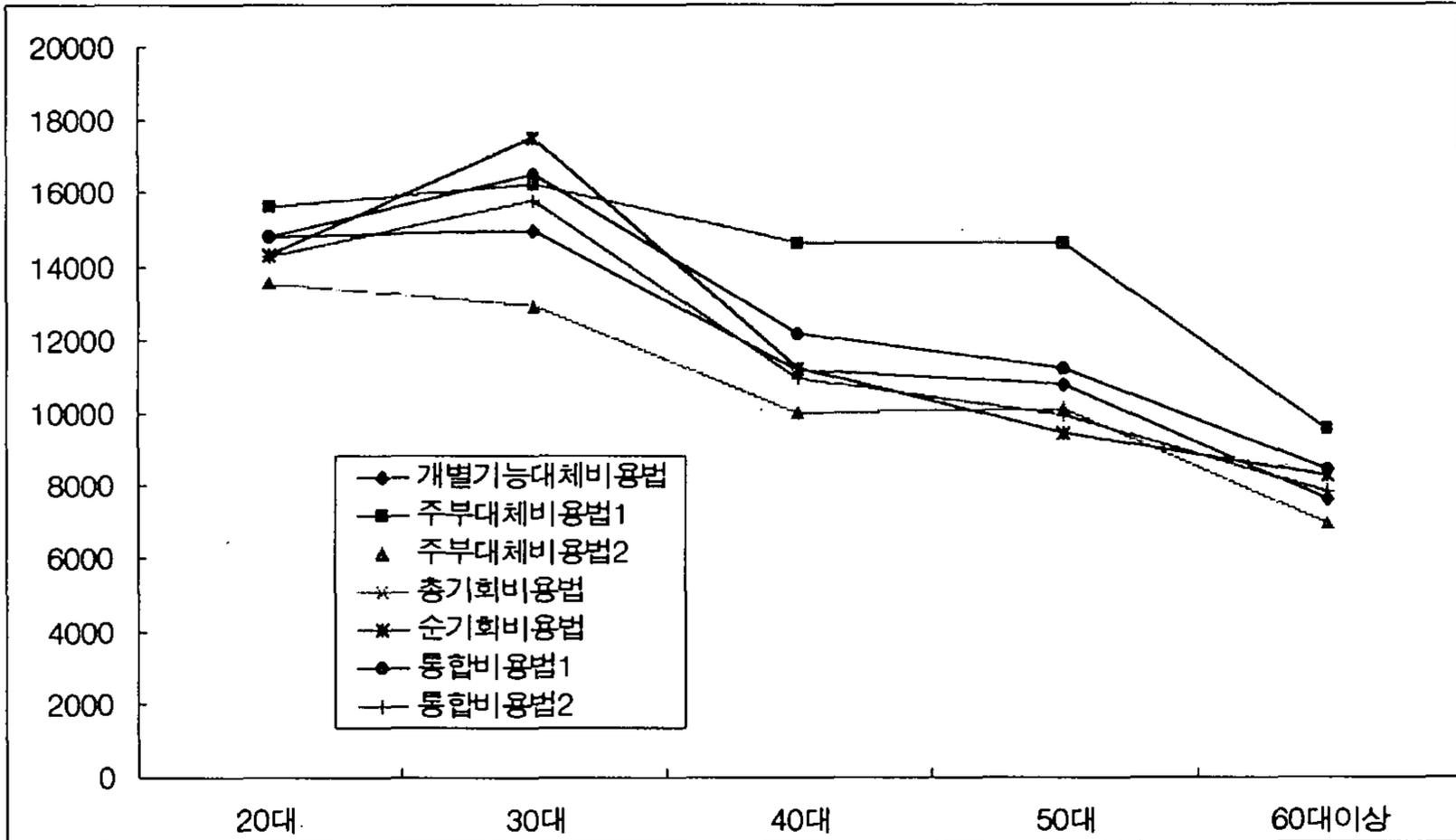
(단위 : 10억원)



<그림 4> 전업주부의 연령별 1인당 평가액(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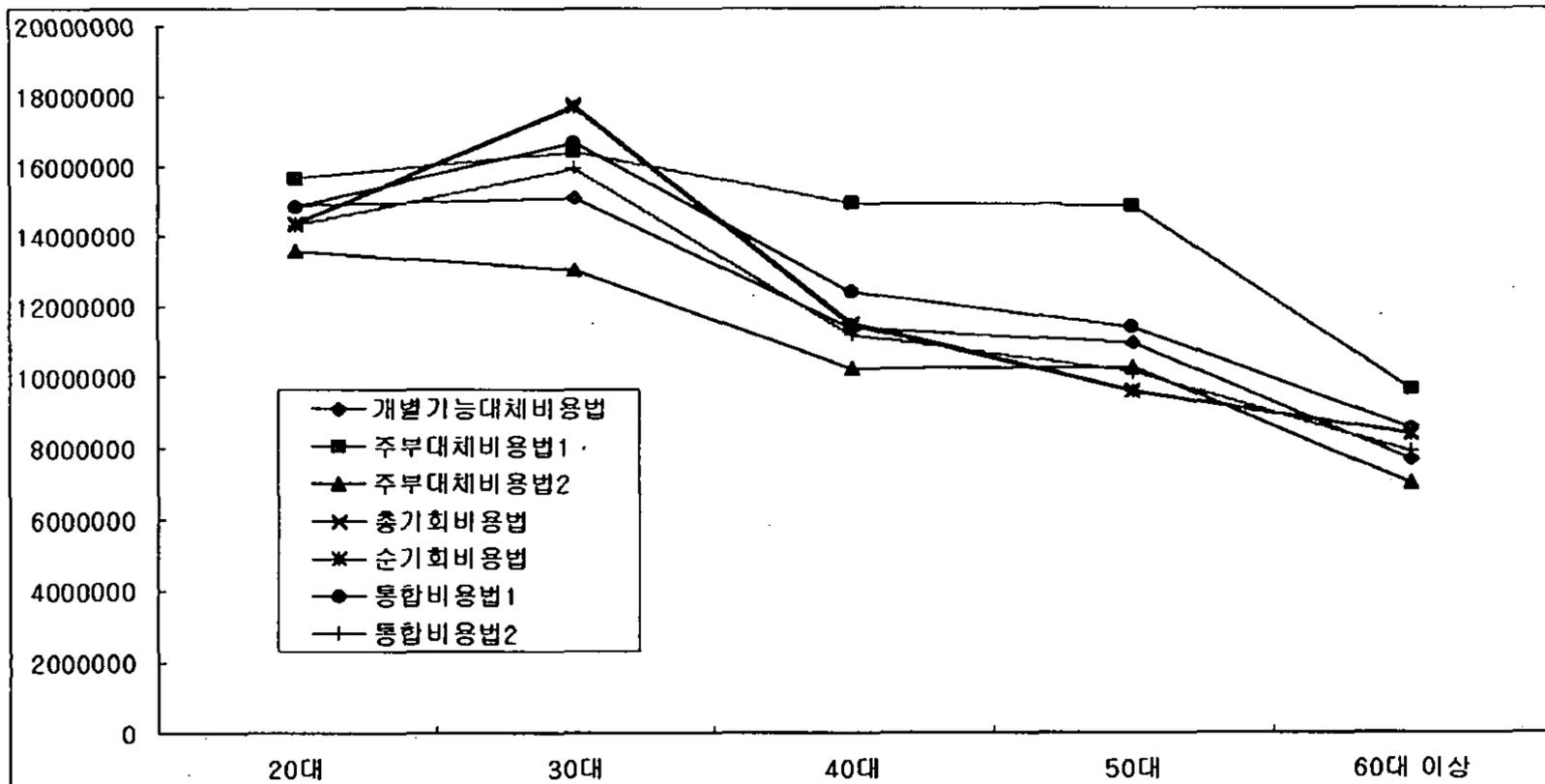
A. 무급가사노동

(단위 : 천원)



B. 무급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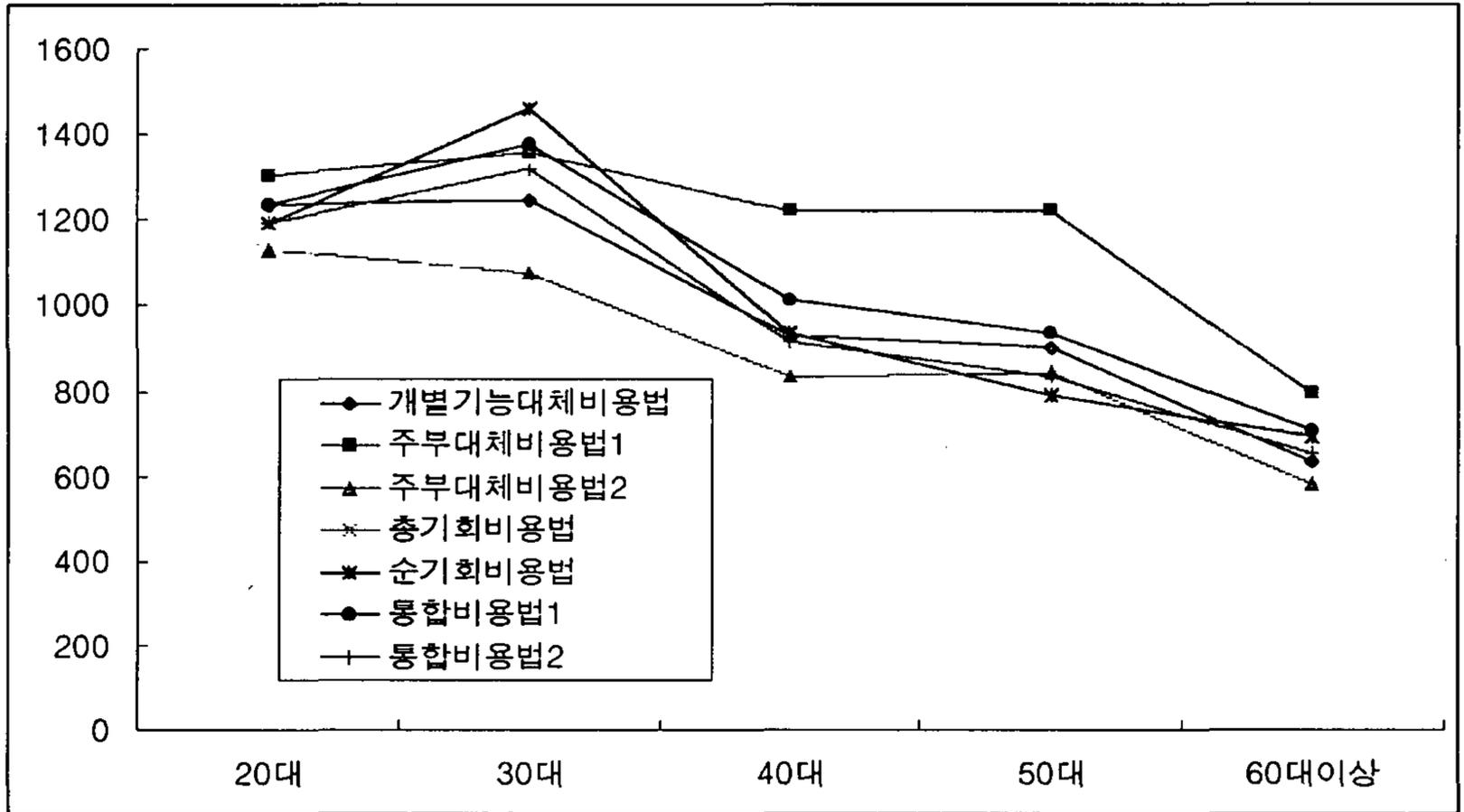
(단위 : 원)



<그림 5> 전업주부의 연령별 1인당 평가액(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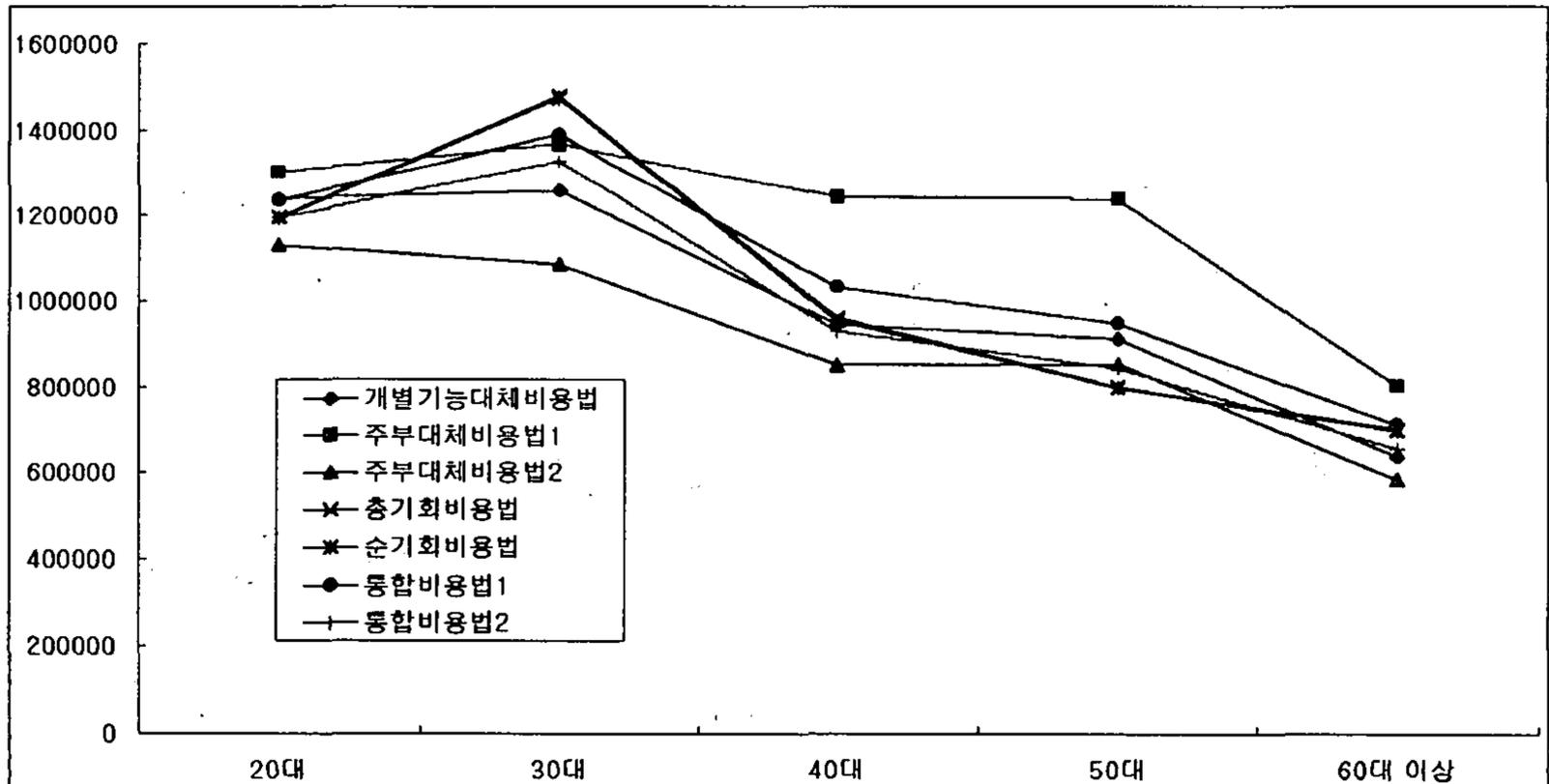
A. 무급가사노동

(단위 : 천원)



B. 무급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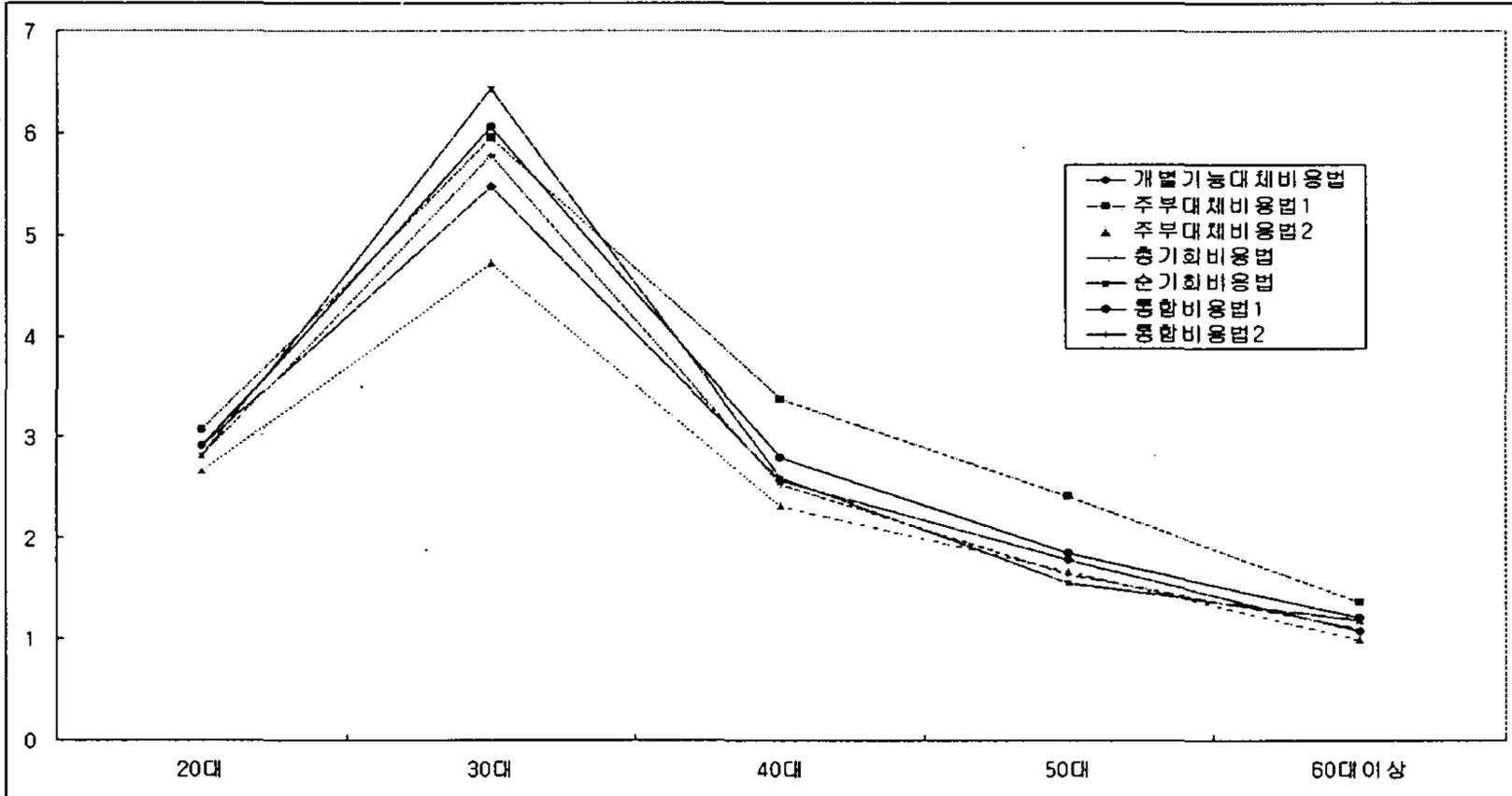
(단위 : 원)



<그림 6> 전업주부의 연령별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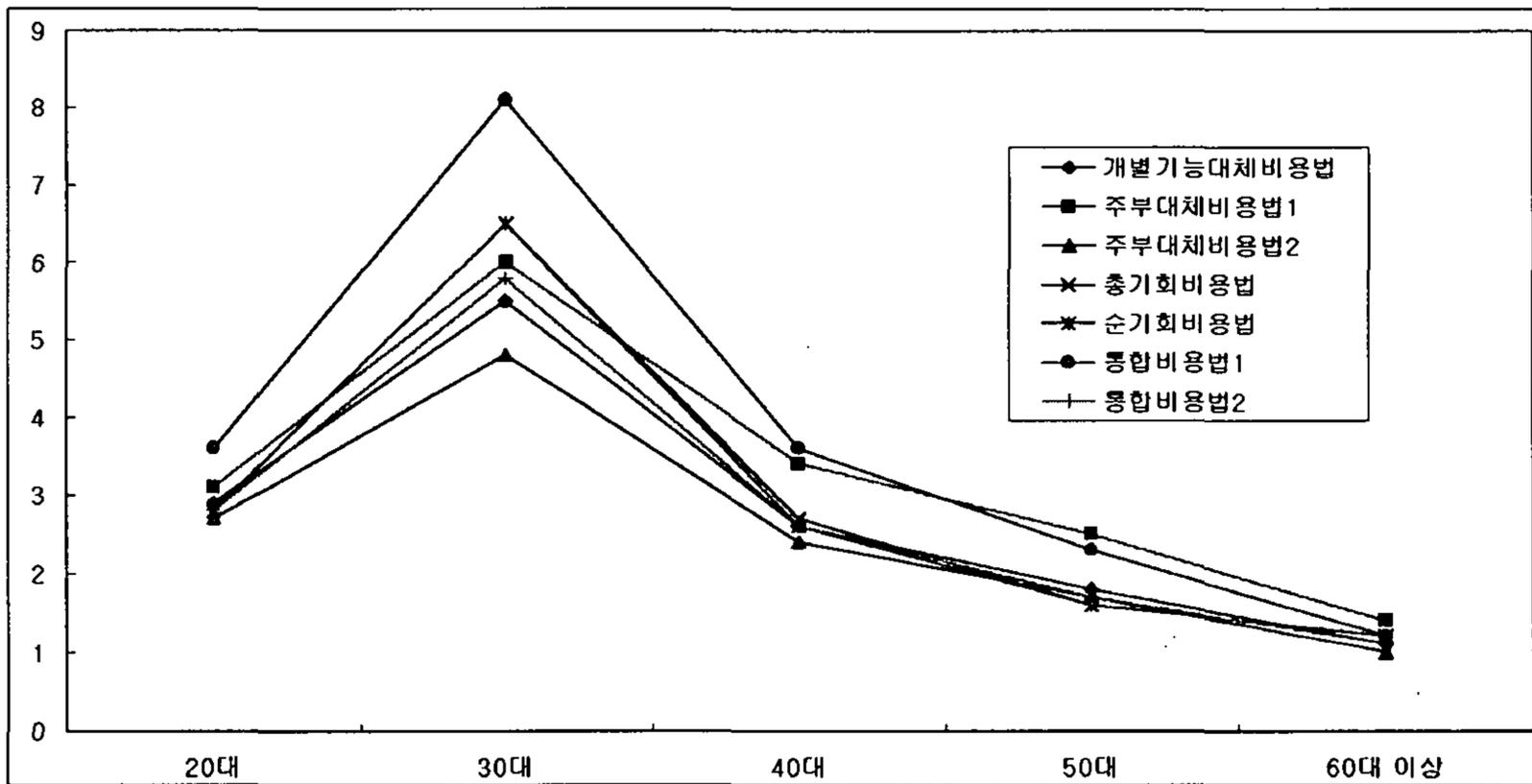
A. 무급가사노동

(단위 : %)



B. 무급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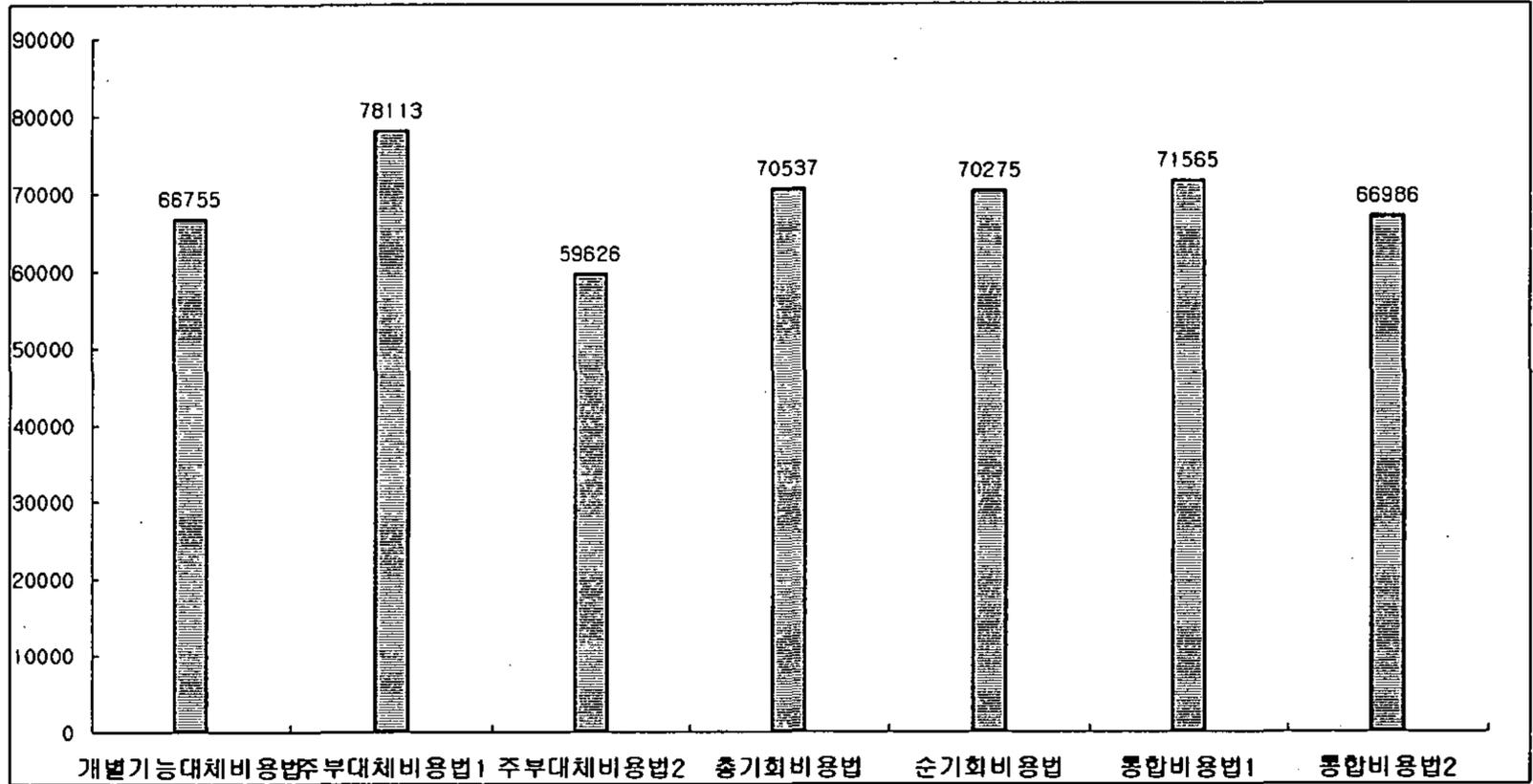
(단위 : %)



<그림 7> 각 가치평가방법별 총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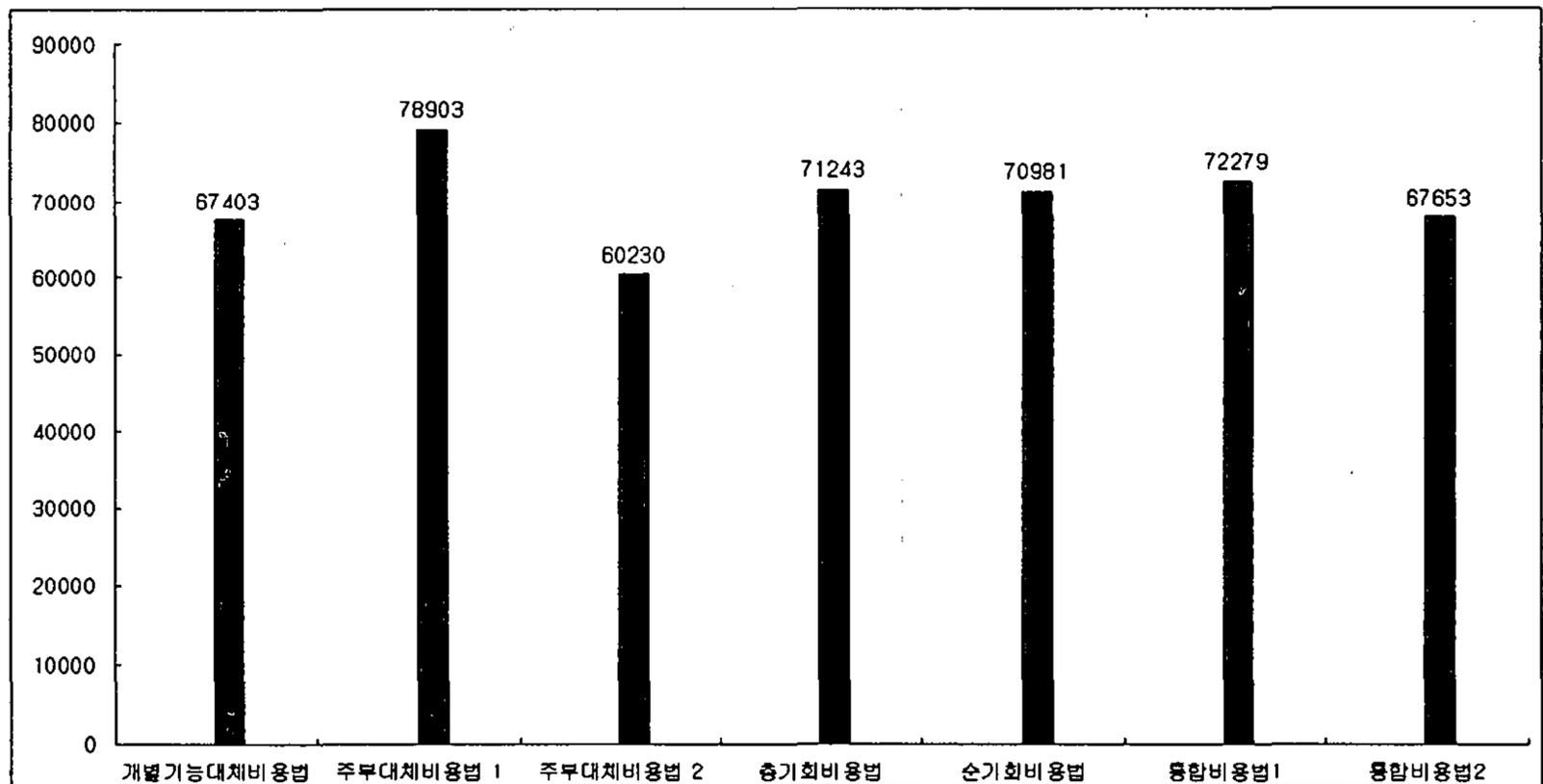
A. 무급가사노동

(단위 : 10억원)



B. 무급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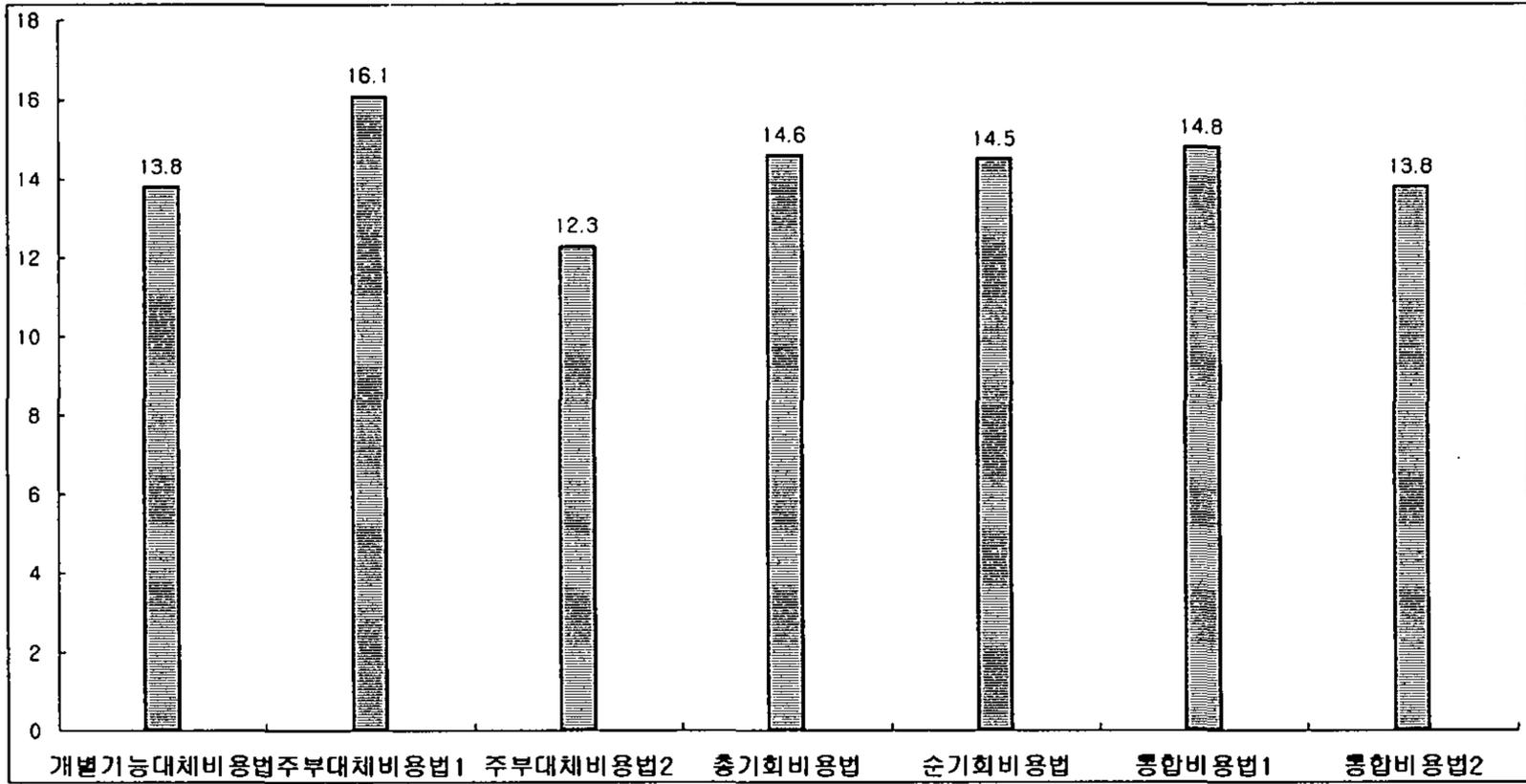
(단위 : 10억원)



<그림 8> 각 가치평가방법별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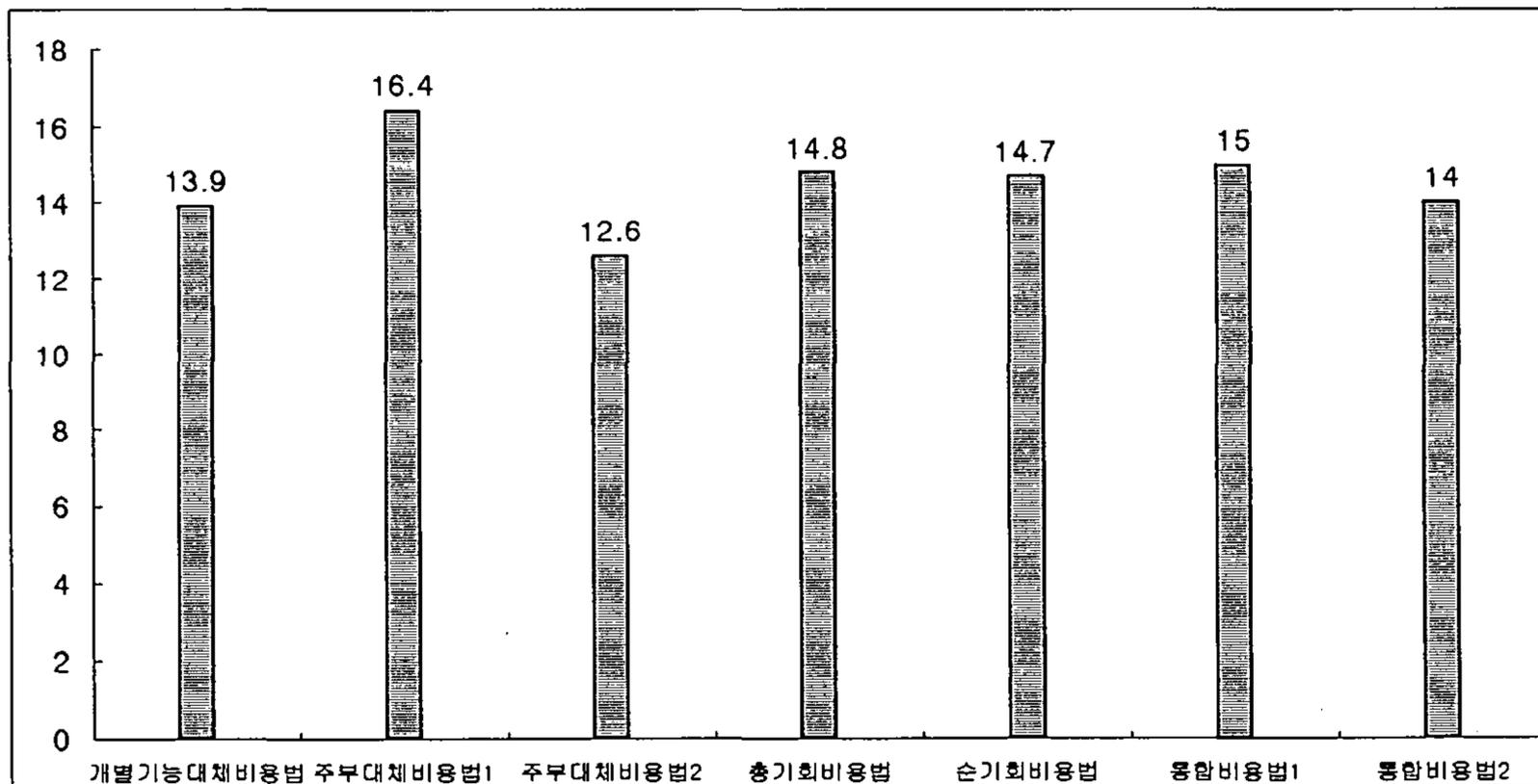
A. 무급가사노동

(단위 : %)



B. 무급노동

(단위 : %)



3. 국내 기존 연구와의 비교 분석

대부분 기존의 국내 연구는 소표본 위주의 개별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부들의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로서 여성학계, 사회학계 및 가정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추계하였기 때문에 이들 기존의 평가결과와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이 분야의 최근 연구결과로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 김태홍(2001)의 주부가사노동평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19> 1인당 월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 비교

(단위 : 원)

연구자	평가방법	개별기능 대체비용법	주부대체 비용법Ⅱ	총기회 비용법	요구임금 법	주관적 평가법
개별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기존연구						
김애실(1985)		271,933	170,669	371,094	-	461,207
최명숙(1986)		251,799	182,813	397,864	-	298,380
정영금(1988)		729,201	529,941	502,391	420,469	538,438
김선희(1990)		345,678	399,358	417,545	343,219	378,860
대륙연구소(1991)		-	385,863	441,988	445,841	530,116
김정희(1995)		640,800	422,400	638,100	535,000	646,200
문숙재·정영금(1991)		707,601	540,366	616,683	676,683	497,996
" (1997)		2,002,511	1,529,236	1,745,213	1,915,013	1,409,32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연구					순기회 비용법	통합 비용법Ⅱ
김태홍(2001)		968,555	856,689	1,026,716	-	-
본 연구(2001)		1,056,808	944,327	1,117,006	1,112,895	1,060,719

주 : 본 연구의 주부대체비용법과 통합비용법은 가사관련 노동임금을 사용한 평가액임.

<표 19>의 가치평가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추계결과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보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추계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다른 연구들이 평가한 가사노동가치와 비교하고 있지만, 주부의 참여 및 봉사활동 가치가 무급노동가치의 1% 내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의 비교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추계결과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사유는 주부의 「생활시간조사」상 표본규모차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시간이용별, 활동별로 이에 상응하는 보다 미시적인 임금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추계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순기회비용법과 통합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국제적 비교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에는 제약요소가 많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두고자 한다. 각국의 무급(가사)노동의 성격, 생활시간, 추계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의 추계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 참고로 일부 OECD 국가들과도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일본의 Katsuki, O.(1997)는 주부가사노동(요리, 청소, 세탁, 바느질, 기타 가사일)에 간호(nursing care), 아동돌보기(child care), 쇼핑, 자원봉사활동(volunteer work)을 포함하여 무급노동의 범주를 정의하고 그 가치를 추계하였다. 추계방법은 통상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무급노동의 가치를 추정하거나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회비용방법(OC방법)은 전체산업별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통계를 사용

하여 추정하였고, 둘째, 시장대체비용방법 중 개별기능 대체비용법(Specialist 방법)에는 남녀별 평균임금통계를 사용하였고, 주부대체비용법Ⅱ(Generlist방법)는 가사근로자(home workers)의 임금조사를 기반으로 가치를 측정하였다.

<표 20>의 추계결과와 같이 1996년기준 기회비용법으로 평가한 여성들의 무급노동가치가 가장 높았고, 주부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가 가장 낮았다. GDP 대비 무급노동의 비중은 15.2%~23.2%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주부 무급노동 가치평가비중보다 약 3%~7% 정도 높게 추계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임금수준이 우리 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서 기인된다.

<표 20> 무급노동의 추계가치와 GDP의 비율

(단위 : 10억엔, %)

년도	방법 GDP총액	기회비용법		개별기능대체비용법		주부대체비용법Ⅱ	
		합계	GDP비	합계	GDP비	합계	GDP비
1981	257,962.9	53,26	20.6	48,54	18.8	37,33	14.5
1986	335,457.2	71,83	21.4	62,86	18.7	49,03	14.6
1991	458,299.1	98,86	21.6	84,03	18.3	66,72	14.6
1996	499,861.0	116.11	23.2	99.77	20.0	76.06	15.2

주요 OECD 국가들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GDP 대비는 전업주부가 아닌 남성과 여성 전체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기초로 한 자료로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GDP 비중은 최소 31%에서 최대 71%까지 차지한 국가도 있었다.

<표 21> 무급(가사)노동(남성, 여성 전체)가치의 국제적 비교

국가	저자	범주	기준년도	GDP 비중(%)
개별기능대체비용법				
호주	통계청	UW	1997	48
스위스	Sousa-Poza/Widmer/ Schmid	"	"	52
캐나다	"	"	1992	43
노르웨이	중앙통계청	UHW	"	37
독일	연방통계청	"	"	71
뉴질랜드	통계부	UW	1990-91	52
덴마크	Bonke	UHW	1987	40(GNP)
미국	Murphy	"	1976	44(")
주부대체비용법				
호주	통계청	UW	1997	43
스위스	Sousa-Poza/Widmer/ Schmid	"	"	41
캐나다	통계청	"	1992	34
독일	연방통계청	UW	1992	67
뉴질랜드	통계부	UW	1990-91	43
스웨덴	통계청	UHW	"	45(GNP)
핀란드	"	UW	1990	45
노르웨이	중앙통계청	UHW	1990	38
덴마크	Bonke	UHW	1987	40(GNP)
프랑스	Chadeau · Fouquet	"	1975	31(")
총기회비용법				
호주	통계청	UW	1997	60
스위스	Sousa-Poza/Widmer/ Schmid	"	"	49
캐나다	"	"	1992	54
뉴질랜드	통계부	UW	1990-91	68
독일	연방통계청	"	"	71
덴마크	Bonke	UHW	1987	35(GNP)
노르웨이	중앙통계청	UHW	1981	40
미국	Murphy	"	1976	60(GNP)
프랑스	Chadeau · Fouquet	"	1975	44(")
순기회비용법				
호주	통계청	UW	1997	48
스위스	Sousa-Poza/Widmer/ Schmid	"	"	38
캐나다	통계청	UHW	1992	32
독일	Schetkatt	UHW	1990	29(GNP)
미국	Murphy	"	1976	51

주 : UHW는 무급가사노동, UW는 무급노동.

5. 무급(가사)노동가치의 결정요인분석과 회귀분석

앞에서 추계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에 있어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2.5%~16.3%로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런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요인분석함으로써 향후 가사노동가치의 발전추이를 진단하는데 기본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는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예컨대, 주부의 교육수준, 나이, 미취학 아동수, 주거전용면적 등)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평가모형에 의하여 추계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찾아보았다. 회귀분석 방정식은 위의 요소들 이외에도 농가, 비농가, 입주형태 등 확장모형까지로 검토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다음의 회귀방정식이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UWK_k = a_1 Educ + a_2 Age + a_3 Child + a_4 Area + \varepsilon_t$$

(단, UWK_k : 평가방법 k 에 의거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 $Educ$: 교육기간,
 Age : 연령, $Child$: 미취학 아동수, $Area$: 주거전용면적)

회귀분석모형은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수준, 연령, 아동수, 주거전용면적으로서 설정하였으며, 추계결과는 다음의 <표 2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평가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들 네 변수 중 교육수준, 연령, 미취학 아동수는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미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전용면적 변수가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주부대체비용법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다른 평가방법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 연령 및 미취학 아동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는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2> 무급노동가치의 회귀분석 결과

	개별기능 대체비용	주부대체비용		총기회비용	순기회비용	통합비용	
		I	II			I	II
교육 수준	867,330 (75.66)	862,562 (74.76)	749,542 (83.46)	963,586 (87.26)	960,879 (87.07)	910,185 (82.69)	889,046,469 (84.93)
연령	62,270 (19.17)	103,958 (31.79)	60,340 (23.71)	58,814 (18.79)	58,373 (18.66)	71,978 (23.07)	60,118394 (20.26)
미취학 아동수	2,215,700 (12.83)	1,423,399 (8.19)	1,465,754 (10.83)	2,427,181 (14.59)	2,427,460 (14.60)	2,097,148 (12.65)	2,154,031,942 (13.66)
주거 전용 면적	7,063 (0.99)	34,606 (4.80)	14,695 (2.62)	496 (0.07)	420 (0.06)	11,534 (1.68)	5,491,529 (0.84)
R ²	0.79	0.83	0.83	0.82	0.82	0.82	0.82

주 : () 안의 값은 t 값.

V.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1999년 실시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의 주부 시간사용자료와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국민경제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시계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1999년 이전에는 전국규모의 주부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가정 하에 1999년의 생활시간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각 연도의 노동부 임금자료를 사용함으로써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추계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계열을 보였으나,

<표 23>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시계열 추이

(단위 :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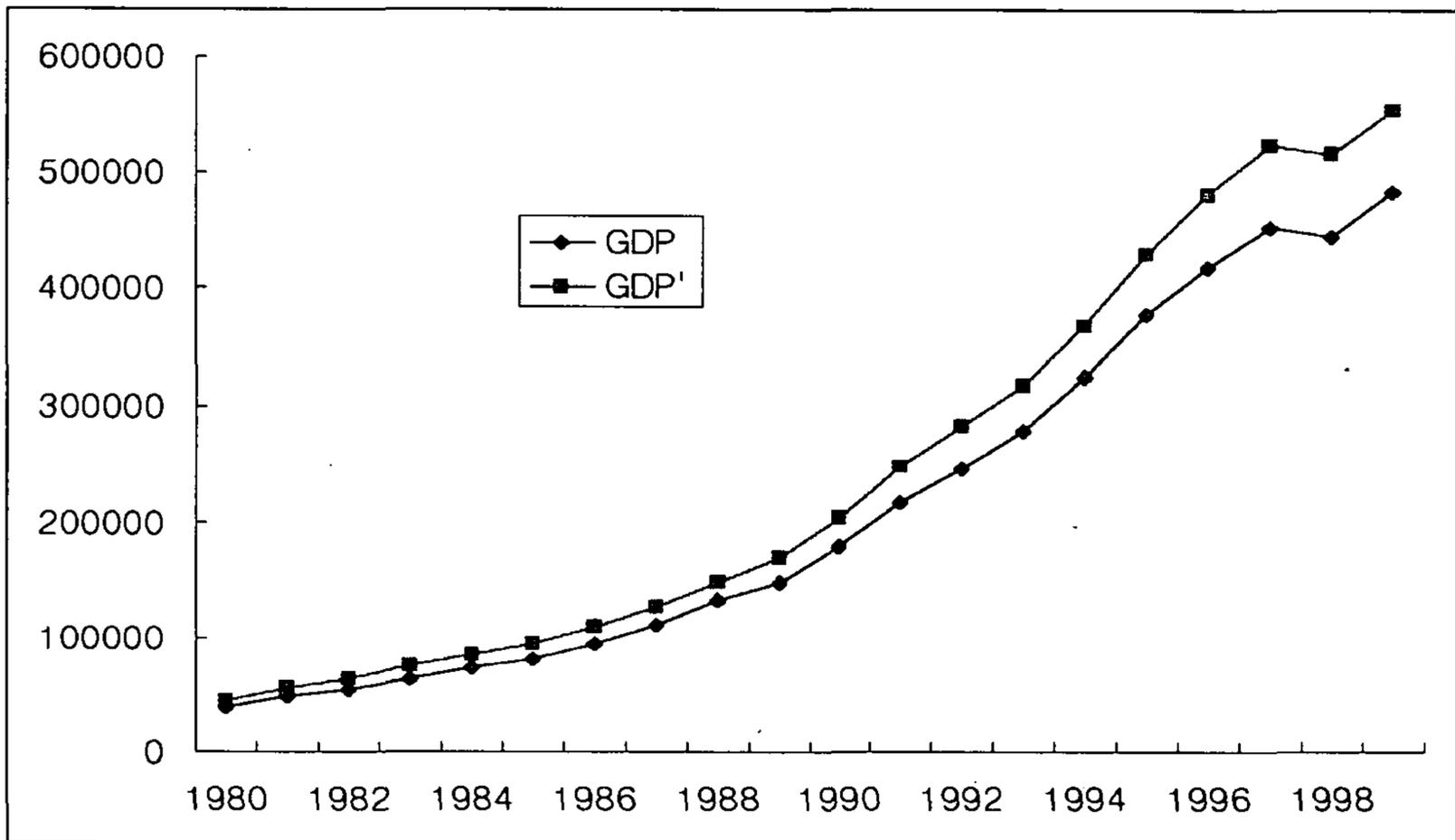
연도	GDP (A)	총기회비용 평가가치(B)	GDP' (A+B)	GDP 대비 비율(%)
1980	37,788.5	6,664.53	44,453.0	17.6
1981	47,382.6	8,350.90	55,733.5	17.6
1982	54,431.3	9,229.47	63,660.8	17.0
1983	63,857.5	10,574.78	74,432.3	16.6
1984	73,003.6	11,323.25	84,326.8	15.5
1985	81,312.3	12,345.11	93,657.4	15.2
1986	94,861.7	13,530.31	108,392.0	14.3
1987	111,197.7	15,223.94	126,421.6	13.7
1988	132,111.8	15,572.02	147,683.8	11.8
1989	148,197.0	20,579.95	168,776.9	13.9
1990	178,796.8	24,348.28	203,145.1	13.6
1991	216,510.9	31,166.01	247,676.9	14.4
1992	245,699.6	35,699.42	281,399.0	14.5
1993	277,496.5	39,239.81	316,736.3	14.1
1994	323,407.1	44,522.13	367,929.2	13.8
1995	377,349.8	52,504.91	429,854.7	13.9
1996	418,479.0	62,401.77	480,880.8	14.9
1997	453,276.4	69,293.61	522,570.0	15.3
1998	444,366.5	70,509.40	514,875.9	15.9
1999	482,744.2	71,243.36	553,987.6	14.8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추계치는 매우 불안정한 시계열을 보였다. 따라서, <표 23>에서와 같이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이용하여 국민경제 기여도를 분석할 것이다.

<표 23>에서 처럼 지난 20년간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주부 무급노동가치는 연평균 14.5%씩 빠르게 증가해 왔고, GDP 대비 비율은 11.8%~17.6%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GDP와 GDP'의 시계열 추이의 비교

(단위 : 10억원)



1. 회귀분석 : 경제성장률 기여도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률(명목) 기여도는 노동과 자본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시계열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분석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Bootstrap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GDP(Y)를 기준으로 노동과 자본의 전통적인 경제성장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lta Y / Y = 0.40532 \Delta N / N + 0.4999 \Delta K / K + \epsilon_t$$

(2.49) (3.66)

$R^2 = 0.90$ D.W = 2.62

(단, () 안의 수치는 t 값)

노동력가치(취업자수×전산업 임금)의 1% 증가와 자본가치 1%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을 기여도는 각각 0.4053과 0.4999로 추계되었다.

둘째,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포함시킨 GDP'($Y' = GDP +$ 주부무급노동가치)에 대한 노동, 자본 및 주부무급노동(N')의 경제성장을 기여도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Delta Y' / Y' = 0.3552 \Delta N / N + 0.4387 \Delta K / K + 0.1002 \Delta N' / N' + \epsilon_t$$

(2.91) (3.54) (2.65)

$R^2 = 0.93$ D.W = 2.46

(단, () 안의 수치는 t 값)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GDP에 포함시킬 경우,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0.1002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평균 14.5% 증가해왔던 것으로 추계됨으로써 $14.5\% \times 0.1002 = 1.45\%$, 즉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경제성장에 지난 20년간 평균 1.45% 기여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GDP에 포함시킬 때에는 제외시킬 경우보다 노동과 자본의 경제성장기여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Tobit 분석 : 생산성 기여도

주부무급노동의 생산성기여도(생산성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기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생산성 차이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Y' - Y = \alpha + \beta N' + \varepsilon \quad (\varepsilon \sim \text{IN}(0, \sigma^2))$$

(단, Y' :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포함한 GDP, Y : 주부가사노동가치를 제외한 GDP, N' : 주부의 가사노동)

Tobit모형은 주부가사노동가치를 GDP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Y' - Y > 0$ 이 되는 반면, 주부가사노동가치를 관찰하지 못함으로써 GDP로부터 제외시킬 경우에는 $Y' - Y = 0$ 이 된다. 즉

$$Y' - Y = \begin{cases} \alpha + \beta N' + \varepsilon & (\text{주부의 노동가치 포함}) \\ 0 & (\text{주부가사노동가치 제외}) \end{cases}$$

Tobit모형에 대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을 구성한 다음,

$$L = \prod_{Y' - Y > 0} \frac{1}{\sigma} f(Y' - Y - \alpha - \beta N') \prod_{Y' - Y = 0} F\left(-\frac{\alpha + \beta N'}{\sigma}\right)$$

β 와 σ 를 최대우도함수(maximum likelihood function)방법에 의하여 주부의 무급노동 생산성기여도를 방정식으로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LS추계결과와 Tobit모형을 기초로 한 ML추계방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4>와 같이 OLS추정방법에 의한 생산성기여도(β)는 하향편기 현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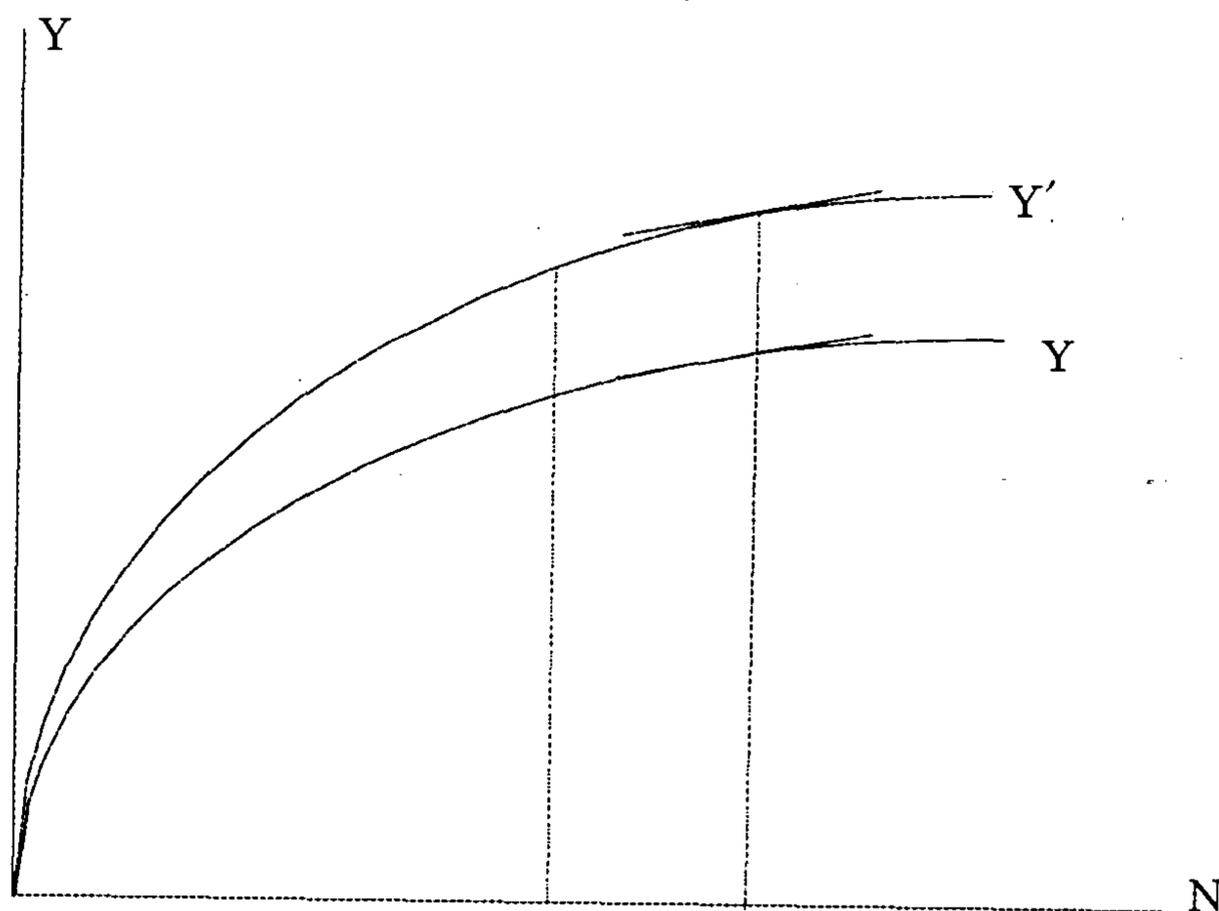
<표 24> 생산성기여도 방정식 추계결과

변수 \ 추정방법	OLS	ML
α	2013.3 (2040.0)	-65597.6 (13947.3)
β	0.24243 (0.00959)	0.44324 (0.04756)

주 :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Tobit모형에 의한 주부의 무급노동이 생산성에 미친 기여도는 0.4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주부의 무급노동은 생산성을 0.44만큼 상승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0> 주부무급노동의 생산성 기여도



3. Granger 인과성 검정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와 GDP(명목)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무급노동가치가 GDP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GDP가 무급노동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원인이 되는지는 위에서 논의한 경제성장기 기여도 분석 못지 않게 중요한 이슈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Granger 인과성 검증을 통하여 GDP와 무급노동가치 사이의 인과성을 점검해 보았다.

인과성 검증결과, 다음 표에서와 같이 1기의 시차를 두고 주부의 무급노동이 GDP 증가를 가져오는 것(유의수준 1%)으로 분석된 반면, GDP가 주부의 무급노동증가를 초래하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위에서 발견된 주부의 무급노동이 GDP 성장률과 생산성에 유의할 만한 기여를 한 추계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25> Granger 인과성 검정

인과성	시차	F 값	유의수준
주부 무급노동 → GDP	1	11.85	0.01
GDP → 주부 무급노동	1	1.65	0.22

VI. 무급(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활용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는 주부들의 법적지위, 경제적 가치와 보상, 그리고 사회보장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부문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 경제, 법률 등 현실적인 구체적 사례로 교통사고시 상해보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조세제도에서 부부간 상속 및 증여, 사회보험제도에서 전업주부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액은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공정하게 접근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공식적인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의 연령계층별 1일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시간당 가치 및 월간가치평가액을 종합고시(告示)하고, 고시된 주부 무급(가사)노동 통합 평가표는 사회, 경제 각 부문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한 분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손해배상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는데, 특히 주부들의 경우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법적, 경제적으로 많은 논쟁이 야기되어 왔다. 손해배상은 직접당사자에 의한 보상, 국가에 의한 보상, 보험에 의한 보상 등 다양한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계된 연령별 주부 무급(가사)노동가치는 주부들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별, 월별, 년별 보상액의 기준을 정하는데 객관적인 잣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의 경우 현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고시가격은 현실소득액으로서 일용 도시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정기준은 주부의 가계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측면을 분석한 결과 크게 과소 평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무급(가사)노동평가 채널과 고시가

법제화됨으로써 주부들이 직면하게 될 손해배상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진 1999년 자료를 기초로 주부의 손해배상금액을 추정하여 기존의 산정방법과 비교하면 <표 2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주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적정수준에 훨씬 못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9년 주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존의 일실수입산정법의하여 산정하면 월 73만원대였는데 비하여, 본 연구의 통합비용법(I)에 의한 산정 보상액은 연령대별로 월 71만원(60대 이상) - 139만원(30대)으로써 전체 월평균가치는 113만원 수준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의거한 보상액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의 일실수입산정법에 의한 보상액 수준은 65%수준(전체평균대비), 특히 무급(가사)노동 가치가 제일 높은 30대 주부가 생산한 가치에 비해서는 53%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표 26> 주부의 손해배상액 비교

방법 형태	기존방법	제안방법
	일실수입산정법	통합비용법 I
도시거주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일용근로자의 보통인부임금 적용 (대한건설협회에서 연간 조사) · 1999년 기준 : 1일 33,323원 × 22일 = 월 733,106원 ※2000년 기준 : 1일 37,483원 × 22일 = 월 824,626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연령별 가치 : 20대 : 1일 40,664.98원 × 30.4일 = 월 1,236,185원 30대 : 1일 45,707.53원 × 30.4일 = 월 1,389,509원 40대 : 1일 33,954.21원 × 30.4일 = 월 1,032,208원 50대 : 1일 31,203.91원 × 30.4일 = 월 948,599원 60대 : 1일 23,376.51원 × 30.4일 = 월 710,646원 · 전체 : 1일 37,277.73원 × 30.4일 = 월 1,133,243원
농촌거주 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일용근로자 농촌임금 적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매월조사) · 1999년 기준 : 1일 29,263원 × 25일 = 월 731,575원 ※2000년 12월 기준 : 1일 32,561원 × 25일 = 월 814,025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1일 37,277.73원 × 30.4일 = 월 1,133,243원 ※2000년 기준 (여성평균임금상승율 10% 반영) : 전체 : 1일 41,005.49원 × 30.4일 = 월 1,246,567원

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0년 취업여성의 월평균임금 (95만 4천 원) 수준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통합비용법 I의 평가가치금액 약 125만원 보다 24% 낮은 수준에 해당됨으로 취업여성들의 임금 수준 역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에도 미달되는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이제 외국의 주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산정 관례 또는 기준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부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을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 측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손해배상으로 인한 소득상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성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때 화폐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근로자 전체연령별 평균임금’ 또는 ‘여성근로자 연령별 평균임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사망이나 부상시 초래되는 소득 상실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평가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무급(가사)노동가치 측정방법 중에서 「주관적 평가법」에 의하여 각 주의 경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여 법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사노동가치를 다양하게 측정한다. 1997년 기준으로 산출된 주부가사노동가치 평가액은 연간 약 \$15,000~\$40,000 정도(Landefeld & McCulla, 2000)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부대체비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정부 고용시 지불하는 시장임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해배상한다. 단, 가족이 가사노동을 분담할 경우에는 가족 수, 연령, 주거의 규모, 가재도구 등을 감안해서 노동량을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보상한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법과 주부대체비용법을 병행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손해배상판례의 예를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부상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상정도에 따라 소득상실액을 최저보상임금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가 공제되었다. 또 다른 사건의 판례에서는 산출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노동능력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대체노동비용을 법원이 평가한 금액(주관적 평가법)으로 보상되었다. 주부가 사망한 다른 판례에서는 소득상실액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주부를 대체할 가정부 임금(주부대체비용법)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다.

한편, 영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부상한 사건의 경우에는 노동능

력상실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가정부(또는 유모)의 고용을 가정하고 여성 근로자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주부대체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외의 판례에서는 부상당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 예컨대 입원기간과 회복기간에 제3자를 고용하였을 것으로 가정한 대체비용이 소득상실금액으로 산출되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따라 가정부를 주 8시간 이상 고용했을 경우의 임금을 기준으로 대체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의 공통점은 산출방법의 용이성에 의존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은 주부대체비용법을 산출기준으로 삼았으며, 활용정도에 따라서 일본은 기회비용법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주관적 평가법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각 주마다 주관적 평가법에 의해 주부의 소득상실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2. 재산분할 및 조세

부부의 이혼시 부부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한 법적 성격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부부가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 전체재산 중에서 분할대상이 명백하게 구분이 가능한 재산을 공제하고,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부부재산별산제'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50%로 분할한다(우리 나라에서도 민법 제 830조에 의거 도입됨). 부부가 일정기간 맞벌이한 경우에는, 부부간 소득차이가 나더라도 소득차이만큼 가사노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50%로 분할한다. 부부 일방이 일정 기간동안 소득을 벌지도 가사노동을 수행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시된 가사노동가치를 이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가치를 산정하여 50%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한다. 판례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현재 최대 30%까지밖에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예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부부재산별산제 수준의 재산분할, 혹은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배우자 소득수준의 상대적 비율을 재산분할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가 무급(가사)노동 등 재산형성에 참여한 몫을 인정하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던 혼인중 이룬 재산을 공동의 것으로 보아 개정 가족법이 상속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기여분제도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제도를 분명히 받아들이는 경우 기여분과 재산분할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왜냐하면 기여분과 재산분할이 원래 자기노력으로 이룬 자기 몫을 찾아가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속과세의 유형중 유산과세형과 또는 여타과세형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나와 관련이 있다. 또한 어떤 유형을 택하는냐에 따라 증여세 및 개인소득세와의 관계가 달라지며 조세행정상의 번잡성, 세수기여도, 부의 집중억제기능 등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유산과세형은 공동상속유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나누기 전에 상속총액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 세액을 각 상속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결국 담세력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유산과세방식은 우리 나라, 미국,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취득과세형은 공동상속유산을 먼저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분할한 다음 그 지분금액마다 당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납부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취득과세형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제도 관련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문제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 공동 형성한 재산부분을 증여세 및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기초공제액이 5억원이고, 상속세는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증여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 기초공제액의 산정은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에 입각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재산정 될 필요가 있겠다.

소득과세에 있어서도 소득세의 인적공제에 있어서 현행소득세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국민경제기여도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배우자(주부)에 대한 인적공제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3. 사회보험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약 8년이 길고 고령 인구의 2/3가 여성이다. 우리 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산업 재해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에서 여성은 임의로 제도에 가입을 함으로써 독자적인 사회보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확보된다. 따라서 남녀간의 생산과 재생산활동의 남녀별 역할분업이 엄격하고, 남녀간의 고용구조가 상당히 다른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이 현행 사회보험제도로 독립적인 수급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가입해야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실제로 배우자의 연금으로부터 파생된 연금수급혜택을 받게 된다. 이혼시 주부들은 이혼배우자 연금분할제도(1998. 12월 도입)에 의하여 연금을 분할받음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 동안 분할연금의 지급은 정지하고, 그 정지기간 동안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분할 연금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연금수급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녀간의 평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부들의 사회보장 수급권, 특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수급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주부 무급(가사)노동가치가 보험료산정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는 연금분할수급권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김태홍, 2000). 우리 나라처럼 소득비례연금제도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유급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나 주부들이 받게되는 제한된 권리만을 가지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불공정한 연금수급권에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

가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사회, 인구변화에 따른 이혼율 급증, 조혼율, 출산율 감소 등에 의해 가족유형의 다양화로 이러한 제도개선의 문제는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부들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공식적,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고시된다면, 이러한 소득표준을 기초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취업단절 시기에 국가나 사회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이혼여성에게 전남편의 보험료와 연계하여 노령임금을 지불하는 방안 및 혼인기간동안에 배우자로 인해서 형성된 연금수급권을 동일하게 분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무급(가사)노동 조사관련 개선점

주부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 『생활시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자료로서 이용되며, 특히 주부들의 생활시간조사와 임금조사가 주부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의 근간이 된다. 이런 점에서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추계될 수 있도록 진전되기 위하여 생활시간조사방법과 임금조사방법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1) 생활시간조사의 개선점⁶⁾

생활시간조사와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로 활동분류기준이다. 무급(가사)노동과 관련된 활동유형 중분류 세 가지 중에서 ‘가정관리’는 유사한 활동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족보살피기’와 ‘참여 및 봉사활동’과 관련된 행동은 무급(가사)노동의 정교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개선안이 요구된다.

6)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공동주최 세미나 자료, 2001. 4.

우선, 김태홍(2001)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가족 보살피기 활동중에서 소분류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511-519)중에서 미취학 아이의 신체적 돌보기,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및 기타활동과 장애아동을 간호하는 활동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활동의 유사성과 비중으로 볼 때, 질병에 걸린 아동의 간호, 장애아동 간호는 오히려 배우자 보살피기(530)와 활동과 동일 항목에서 조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보살피기 활동은 주로 간호와 연관된 항목에 해당되므로, 활동의 사례에서도 배우자의 출근 준비돕기, 안마 와 함께 배우자의 간호를 포함시켜 예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활시간조사의 대상이 되는 활동분류는 우선적으로 국민소득에 산입되는 무급(가사)활동과 산입되지 않는 무급(가사)활동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활동이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와 관련된 활동(610)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생산적 활동이나 국민소득에 산입되는 유급활동인지 무급활동인지의 여부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먼저 이웃 집의 가게나 농업 등 자영업자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는 국민소득에 산입된다. 이에 비해 애경사와 관련된 가사활동을 돕는 활동은 국민소득에 산입되지 않는 활동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는 활동은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무급활동의 분류는 UNSD와 같이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봉사,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개인에 대한 봉사활동 등과 같은 분류보다는 해당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분류가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에는 각종 행사지원뿐만 아니라 환경 및 범죄예방, 교통관련 봉사활동 등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자녀교육관련은 학교 내에서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봉사활동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참여 및 봉사활동과 관련된 이동에서도 생산적 활동인 봉사활동과 비생산적인 활동인 참여활동을 위한 이동시간을 구분해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사회참여활동에서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은 각종 모임이나 집회와는 달리 Reid의 제3자 원칙(Reid's 'third-party criterion')에 의하면 생산적 활동이므로 양자를 구분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 및 봉사활동 중에서 생산적인 활동과 비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결된다면, 보다 정밀한 무급노동가치의 경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생활시간조사의 조사항목 중 조사표 문항의 과학화와 정교화이다. 실제로 조사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정확한 사실을 기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간결, 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토대로 풍성한 미래사회의 제도적,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 경제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생활시간조사중 일부항목이 보완, 첨가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사대상 주부의 결혼 연수를 기입하는 항목이나, 미취학 아동의 연령과 더불어 미취학아동의 수를 기입하는 항목, 조사대상자가 취업자일 경우 직업에 대한 세분류와 직위기입 및 가구의 월평균소득(지난 3개월 월평균소득)을 연간베이스의 총소득으로 문항을 개선시키거나 추가한다면, 개별기능별대체비용법이나, 기회비용법으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는데 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로, 생활시간조사의 무급(가사)노동의 활동분류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항목과 서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계청과 노동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있어서 주부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대체임금 변수의 존재여부가 평가의 정확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2) 임금조사의 개선점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있어서 수량변수로서의 생활시간조사와 가격변수로서의 임금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특히 임금조사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전산업 5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총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해서 추출된 5,5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소규모 표본조사로 인해서 임금통계는 표준직업분류상에서 소분류(3단위)직종에 대해서만 발표된다. 더욱이 무급(가사)노동과 관련된 조사대상 사업체는 대부분 서비스업인데다가 이들 사업체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일부

직종(표본추출된 근로자수가 적거나 희귀한 직종)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무급노동과 관련된 직업의 상당수는 2단위 중분류 직종으로 임금이 발표된다. 그 결과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따른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조사의 표본 수를 더 확대하거나, 조사대상직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무급(가사)노동과 관련된 직종에 대한 정기적인 특별임금조사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된 조사방법은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5년 단위로 임금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매년 정기적인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시 4단위 세분류의 세부직종에 대한 임금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임금조사가 개선된다면,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뿐만 아니라 가계무급생산 위성계정을 정밀하게 개발하는데 새로운 모멘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특히 참여 및 봉사활동과 관련된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있어서 대체임금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된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임금을 사용하여 주부의 무급 참여 및 봉사활동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유급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임금조사는 주부 무급(가사)노동활동 중 참여 및 봉사활동을 적극 반영하여 활동영역별로 보다 세분화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V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초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기존의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에 의하여 추계하고, 이들 추계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방법을 가중평균한 새로운 추계방법인 통합대체비용법을 개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는 추정방법에 따라서 다소 편차는 있었으나,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연간 총평가액은 약 60.2조원에서 약 78.9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중에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총평가액이 가장 높게 추계된 방법은 주부대체비용법 I 이었으며, 가장 낮게 추정된 방법은 주부대체비용법 II였다.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의 1999년도 GDP대비 비율은 12.5%~16.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 월별 1인당 평가액은 최소 63만원에서 최대 148만원이었다. 이를 연령별 분포로 비교하면, 모든 추계방법에서 30대 주부의 월별 평가액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계층은 60대 이상 주부들이었다. 또한 20대, 30대 주부를 포함해서 연간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년도와 추정방법, 추정대상의 범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1999년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의 GDP대비율은 1996년 기준 일본의 무급(가사)노동의 GDP 비중 15.2%~23.2%보다 약 3%~7%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1999년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는 GDP에서 약 15% (각 개별평가방법의 통합치)를 차지하는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주부 1인당 연간 무급노동가치는 약 1,360만원, 월별 무급노동가치는 113만원에 해당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시계열 자료로 연장하여 지난 20년간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이 국민경제에 미친 기여도를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측면에서 회귀모형과 Tobit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으로 인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추계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손해배상, 이혼시 재산분할 및 사회보험 등에서 현실적으로 전업주부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과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에서 주부들을 위하여 적절한 보상을 합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제도적 장치로서 주부의 생산적인 노동인 무급(가사)노동의 표준화된 정의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가 정기적으로 평가된 무급(가사)노동가치를 고시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액을 사회보험 제도와 사적보험 및 법률적인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시계열로 연장하여 지난 20년간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14.5%로 빠르게 증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급(가사)노동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본 GDP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경제, 사회, 특히 노동, 복지, 여성분야의 정책수립과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로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국민소득에 반영시켜 나간다면,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사회경제적 소수계층에 속하는 결혼가정 및 여성가장인 가계들이 직면하는 법률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사회적 공동가치에 부합되는 삶의 질적 개선과 향상으로 지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부의 무급노동은 국민경제적으로 주목받아야만 하고,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소득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무급가계생산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of Household Production)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론 및 발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衛星計定에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 즉 家計生産(household production)價値의 測定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 주요배경은 「1993년 新국민소득계정(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 가계의 최종 자가소비(final self-consumption)를 위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의 無給生産(unpaid production)을 국민소득계정에 포함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추천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여성들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기여도의 재평가 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나아가서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비교할 경제지표(GDP)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신국민소득계정

의 기본정신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무급노동종사자가 40%이상이나 되고 1차산업이 중심인 개발도상국의 국민소득 측정에 가사노동가치가 반영될 수 있게 되었고, 선진국의 경우 가계생산이 창출하는 삶의 質的인 측면을 국민소득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복지분야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는 극히 단순한 평가방법을 원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 경제적 기여도 분석이나 가사노동가치평가를 결정하는 요인분석 등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무급노동가치평가는 평가방법에서의 객관도는 진전되고 있으나, 정확도와 정밀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추계과정에서 노동유형별 또는 직종별 미시적인 임금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중분류 또는 평균임금을 사용하였거나, 연령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가치평가에 있어서 무급(가사)노동의 임금적합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여성 또는 주부의 인구를 추계하여 각 연령별 주부수를 가치평가의 과정에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만한 연령별 주부인구추계가 생략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가치추계과정에 투영시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비전 하에서, 비시장생산(non-market production)부문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제도적인 차원으로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무급노동가치의 평가방법은 투입접근방법과 산출접근방법이 있고, 각 접근법은 수량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무급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산출량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실현 가능한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투입접근법을 보편적으로 채택하여 각 무급생산활동에 투입된 시간에 적합한 임금을 곱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투입접근법에 의한 평가모형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나,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으로 크게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형을 보다 세분시켜 네가지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들 네 모형에 임금가중치를 사용하여 통합평가모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시장대체비용법(market replacement cost method)은 시장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가사일을 수행시키는 대신, 주부 스스로 가사 일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추계방법이다.

개별기능대체비용법(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 : IFR)은 가사노동영역에 속하는 각각의 기능을 분류한 후, 각 기능에 해당되는 임금을 연령별로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즉 가사노동을 개별기능으로 나누어서 각 개별기능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 한 후, 이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임금을 연령별로 적용시켜 가사노동 가치를 추계한다. 특히 본 추계방법은 주부의 무급노동을 활동·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1992)』와 노동부에서 발표된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직종별, 연령별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추계하였다.

주부대체비용법(housekeeper replacement cost method)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하나의 가정관리직으로 간주하여 주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체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대체비용을 가정관리활동, 가족 보살피기 활동,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을 대상으로 각 활동에 상응하는 연령별 대체임금을 가중평균한 임금(W_{Hj})으로써 본 추계방법에 따라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였다.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주부가 무급노동에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유급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희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총기회비용법과 순기회비용법으로 구분된다. 총기회비용법(gross opportunity cost method)은 주부가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노동을 포기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이 한계임금률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순기회비용법(net opportunity cost method : NOC)은 주부들이 유급노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순기회비용으로써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

는 방법이다. 순기회비용은 총기회비용에서 세금과 노동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임금소득에 해당되며, 순기회비용의 측정시 기본자료인 세금과 노동관련비용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우므로 순기회비용법에 의거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는 순기회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는 추계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1999)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여성근로자들의 평균소득세를 추계한 후, 이를 총기회비용에서 제외시켜 순기회비용을 계측하였다.

통합대체비용법(integrated replacement cost method)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가 기회비용법 혹은 개별기능대체비용법으로 추계할 경우, 추계치의 결과가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추정된 4가지 평가가치를 적용하여 통합 평가하는 모형이다. 특히,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다른 어떤 추정방법 보다 직종별로 미시적인 임금자료가 추계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총기회비용법은 현재 무급노동자로서의 주부들이 앞으로 사회진출을 하여 유급노동자로 전환될 경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가지 평가기법에 의하여 추계된 가사노동가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평가방법에 사용된 평균임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통합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은 20세 이상 전체여성들의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비교할 때 약 1.5배정도 더 길었으며, 사용시간의 편차가 큰 주부들의 주요가사활동에는 음식준비, 가족 보살피기,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여성과 주부의 활동유형별 무급노동시간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본 무급노동시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여성과 전업주부 모두가 가정관리활동에 전체 무급노동시간의 2/3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서도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나머지의 시간은 가족 보살피기 활동에 사용하였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 돌보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전체여성에 비해 전업주부의 시간사용비중이 약 4.4% 높았다.

주부의 연령계층별 무급노동시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연령별 무급노동시간은 전체여성의 평균무급노동시간과 비교해 볼 때 20대와 30대는 상대

적으로 길었던 반면, 40대부터는 오히려 전체평균무급노동시간보다도 짧게 나타났다.

향후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정밀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의 무급(가사)활동에 상응하는 소분류 임금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가사노동에 상응하는 소분류 시간당 임금을 활동유형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가족보살피기의 평균임금이 7,940원으로 가정관리활동의 평균임금 5,212원, 참여, 봉사활동의 5,642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직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643원 수준이었고, 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50대가 6,134원으로서 가장 높고, 40대, 30대, 2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추계되었다.

연령별 가사노동참여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의 '가사·육아'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유배우 여자인구(1999년 5,315천명)에 「생활시간조사」대상 표본의 연령별 주부가사노동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고, 주부의 가사노동 참여수는 30대가 약 1/3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40대, 2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서였다.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총가치는 연간 66.7조원으로서 GDP대비 13.8%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비중은 무급노동의 연간 총가치 67.4조원으로서 GDP 대비 13.9%와 비교하면 참여 및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무급노동의 경우가 약 0.1%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무급가사노동이나 무급노동의 경우 모두 30대가 각각 26.4조원, 26.7조원으로서 GDP 대비 약 5.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고, 총가치의 약 40%를 점유하였다.

활동유형별 평가가치 비중은 가정관리가 61.33%, 가족 보살피기가 37.71%, 참여 및 봉사활동은 1% 미만이었다. 소분류 활동유형의 경우, 식사준비 및 설거지 무급가사활동의 가치가 27.17%, 미취학아동 돌보기가 24.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부대체비용법은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H_j), 연령별 무급노동참여 주부수(PK_j) 및 연령별 주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평균임금(W_{Hj})을 사용하여 무급노동가치를 산출한다. 이 추계방법에서 기본변수인 연령별 주부대체임금(W_{Hj})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로, 주부대체임금을 주부의 무급노동인 가정관리, 가족살피기 그리고 참여 및 봉사활동의 임금

을 전체 주부의 총무급노동시간 대 각 유형별 무급노동시간 비율을 가중치로써 가중평균 하였다(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법). 둘째로, 기존의 연구관례와 같이 가사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삼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1993)』 기준 KSCO코드 512(51211), 가사 및 관련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주부대체임금으로 사용하였다(가사평균임금법).

위의 두 접근방법에 의한 주부대체임금을 비교하면, 주부 무급노동 평균임금법에 의한 주부대체임금이 가사평균임금법의 주부대체임금보다 약 32% 높게 추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접근방법에 의하여 주부대체비용법에 의한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였다.

우선, 주부대체비용법 I(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법)에 의한 주부들의 무급노동가치 총평가액은 <표 10>에서 처럼 총 78.9조원, 1인당 평가가치는 1,48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30, 40대의 무급노동가치 평가액은 약 28.9조원과 약 17조원, 구성비는 36.7%, 21.1%로 각각 나타나서 전체의 57.8%인 45.5조원 정도를 점하고 있다. 1인당 평가가치를 보면, 전체 평가액과 마찬가지로 30대의 1인당 평가가치가 1,640만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40대의 경우, 전체 평가가치의 순위와 다르게 20대의 1,564만원보다 낮은 1,49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주부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총평가액은 78.1조원, 1인당 연간 평가가치는 1,470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령별로는 무급노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30, 40대의 순으로 전체의 57.5%인 44.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평가가치를 보면, 30대가 1,626만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으며, 40대의 경우에는 무급노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20대의 1,561만원보다도 낮은 1,464만원으로 전체 연령의 1인당 연간평균가치인 1,470만원보다도 약간 낮았다. GDP 대비 비중은 총평가액의 경우 16.3%이며 30대, 40대, 20대 비중이 각각 6.0%, 3.4%, 3.1% 순이었다.

한편, 주부대체비용법 II(가사평균임금법)에 의한 전업주부의 무급노동가치 총평가액은 60.2조원으로서 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 31% 낮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3.0조원, 20대가 12.9조원, 40대가 11.4조원, 50대가 8.2조원, 60대 이상이 4.8조원 순으로 나타났고, GDP 대비 12.5%를 차지하였다. 총기회비용법은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H_j), 연령별 무급노동참여주부수(PK_j) 및 연령별 총기회비용을 적용하여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연령별 총기회비용은 여성이 사회진출하여 얻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여성의 전직종 연령별 평균임금(「1999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노동부 원자료 이용)을 사용하였다. 연령별 시간당 총기회비용은 30대가 6,331.1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 2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각 연령대별 시간당 총기회비용이 가사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사용한 주부대체비용Ⅱ 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부의 무급노동평균임금법을 기초로 한 주부대체비용Ⅰ 보다는 시간당 총기회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총기회비용법에 의하면, 주부의 무급노동의 총가치는 약 71.2조원, 1인당 평가가치는 1,34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30대 전업주부의 무급노동가치 평가액이 전체 평가액의 44.0%에 이르러 40대 전업주부의 평가액까지 합치면 구성비는 62.0%, 화폐가치로는 44.1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20대 13.6조원(구성비 19.2%), 50대 7.6조원(구성비 10.7%) 순이었고, 60세 이상은 구성비가 8.1%로서 현저하게 낮았다. 1인당 평가가치는 30대가 가장 높은 1,775만원으로 추계되었고, 주부대체비용법 추정결과와 유사하게 20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GDP 대비 비중을 보면, 총평가액은 14.8%로 추정되었고, 30대 6.5%, 20, 40대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가장 낮았다.

순기회비용법은 총기회비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총기회비용 대신에 순기회비용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총기회비용에서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기초로 하여 추계한 연령별 평균소득세를 제하여 순기회비용을 구했다. 순기회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무급노동의 총가치평가액은 약 71조원, 1인당 평가가치는 1,335만원으로 나타났다. 순기회비용법 역시 30대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의 총평가액이 31.2조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대의 13.6조원, 40대의 12.7조원 순이었다. 1인당 평가가치는 30대 1,769만원, 20대 1,433만원, 40대 1,144만원 순으로 역시 20대가 40대 전업주부의 1인당 평가가치보다는 높게 추정되었다. GDP 대비 비중 역시 1인당 평가가치 순위와 같게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은 30대 6.5%, 20대 2.8%, 40대 2.6% 순이었으며, 총평가액은 GDP의 14.7%를 차지했다.

통합비용법은 위에서 추계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각 평가방법에서 사용한 평균임금율의 상대적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였다(<표 15>참조). 임금가중치 I 은 주부대체비용을 주부의 무급(가사) 노동 평균임금법에 의하여 추계된 시간당 평균임금을, 임금가중치 II 는 주부대체비용을 시간당 가사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주부 무급(가사)노동의 평균임금을 사용한 통합비용법 I 에 의하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은 72.3조원으로서 GDP의 15%를 차지하였으며, 1인당 평가가치는 1,36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30대의 총평가액과 1인당 평가가치는 각각 30.0조원과 1,667만원이었고, 20대와 40대는 총평가액의 경우 14조원 수준에서 비슷하게 추정되었지만, 1인당 평가가치는 20대가 40대에 비하여 약 250만원 정도 많은 1,48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의 가사 및 관련여성근로자 평균임금(512)을 사용한 통합비용법 II 에 의한 무급노동의 총평가액은 67.7조원으로서 GDP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역시 30대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28.2조원으로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가액은 1,594만원, GDP의 5.8%를 점했다. 또한 무급가사노동의 경우로 구분해서 보면, 총평가액은 67.0조원으로 약 0.7조원 낮게 추정되었으며 GDP대비 점유율도 13.9%로 무급노동의 경우보다 0.1%정도 낮았다. 연령별 1인당 평가액의 크기도 30대, 20대, 40대순이었으며, 50대 이상의 주부들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 평가결과에 의하면,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67.4조원, 주부대체비용법 I 은 78.9조원, 주부대체비용법 II 는 60.2조원, 순기회비용법은 7.1조원, 총기회비용법은 71.2조원으로 추계되었고, 이들 다섯가지 방법에 의한 평가가치를 가중평균한 통합비용법 I 은 72.3조원, 통합비용법 II 는 67.7조원으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평가되었다. 주부 1인당 무급노동가치는 평가 방법에 따라 1,286만원에서 1,485만원으로 환산되었고, 통합비용법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결과 1,273만원 또는 1,36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부대체비용법 I 또는 총기회비용법의 경우가 약 16.3% 또는 14.8%로 가장 높았고, 주부대체비용법 II 의 경우 약 12.5%로 가장 낮았다. 이들 GDP 비중을 가중평균한 통합비용법에 의한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GDP 비중은 15%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추계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GDP에서 12.5% 내지 16.3%의 범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의 추

계결과(1996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주부무급(가사)노동의 GDP 대비 비율이 약 3%~7% 정도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추계결과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보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추계결과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주부의 「생활시간조사」상 표본규모차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시간이용별, 활동별로 이에 상응하는 보다 미시적인 임금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추계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순기회비용법과 통합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에서 추계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에 있어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2.5%~16.3%로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런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요인분석함으로써 향후 가사노동가치의 발전추이를 진단하는데 기본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귀분석모형은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수준, 연령, 아동수, 주거전용면적으로서 설정하였으며, 추계결과는 평가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들 네 변수 중 교육수준, 연령, 미취학 아동수는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미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전용면적 변수가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주부대체비용법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다른 평가방법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 연령 및 미취학 아동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는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9년 실시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의 주부 시간사용자료와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국민경제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시계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1999년 이전에는 전국규모의 주부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가정 하에 1999년의 생활시간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각 연도의 노동부 임금자료를 사용함으로써 1980년부터 1999년

까지의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추계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계열을 보였으나,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추계치는 매우 불안정한 시계열을 보였다. 따라서,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이용하여 국민경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난 20년간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주부 무급노동가치는 연평균 14.5%씩 빠르게 증가해 왔고, GDP 대비 비율은 11.8%~17.6%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GDP에 포함시킬 경우,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0.1002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평균 14.5% 증가해왔던 것으로 추계됨으로써 $14.5\% \times 0.1002 = 1.45\%$, 즉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경제성장률에 지난 20년간 평균 1.45% 기여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GDP에 포함시킬 때에는 제외시킬 경우보다 노동과 자본의 경제성장기여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Granger 인과성 검증을 통하여 GDP와 무급노동가치 사이의 인과성을 점검해 보았다.

인과성 검증결과, 1기의 시차를 두고 주부의 무급노동이 GDP 증가를 가져오는 것(유의수준 1%)으로 분석된 반면, GDP가 주부의 무급노동증가를 초래하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및 조세, 그리고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진 1999년 자료를 기초로 주부의 손해배상금액을 추정하여 기존의 산정방법과 비교하면 <표 2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주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적정수준에 훨씬 못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9년 주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존의 일실수입산정법의하여 산정하면 월 73만원대였는데 비하여, 본 연구의 통합비용법(I)에 의한 산정 보상액은 연령대별로 월 71만원(60대 이상)~139만원(30대)으로써 전체 월평균가치는 113만원 수준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의거한 보상액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의 일실수입산정법에 의한 보상액 수준은 65%수준(전체평균대비), 특히 무급(가사)노동 가치가 제일 높은 30대 주부가 생산한

가치에 비해서는 53%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0년 취업여성의 월평균임금 (95만 4천 원) 수준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통합비용법 I의 평가가치금액 약 125만원 보다 24% 낮은 수준에 해당됨으로 취업여성들의 임금 수준 역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에도 미달되는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배우자가 무급(가사)노동 등 재산형성에 참여한 몫을 인정하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던 혼인중 이룬 재산을 공동의 것으로 보아 개정 가족법이 상속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기여분제도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제도를 분명히 받아들이는 경우 기여분과 재산분할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왜냐하면 기여분과 재산분할이 원래 자기노력으로 이룬 자기 몫을 찾아가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세제도 관련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문제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 공동 형성한 재산부분을 증여세 및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기초공제액이 5억원이고, 상속세는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증여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 기초공제액의 산정은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에 입각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재산정 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서 실질적인 남녀간의 평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부들의 사회보장 수급권, 특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수급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주부 무급(가사)노동가치가 보험료산정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는 연금분할수급권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우리 나라처럼 소득비례연금제도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유급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나 주부들이 받게되는 제한된 권리만을 가지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불공정한 연금수급권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사회, 인구변화에 따른

이혼을 급증, 조혼율, 출산율 감소 등에 의해 가족유형의 다양화로 이러한 제도개선의 문제는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부들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공식적,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고시된다면, 이러한 소득표준을 기초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취업단절 시기에 국가나 사회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이혼여성에게 전남편의 보험료와 연계하여 노령임금을 지불하는 방안 및 혼인기간동안 배우자로 인해서 형성된 연금수급권을 동일하게 분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추계될 수 있도록 진전되기 위하여 생활시간조사방법과 임금조사방법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가족 보살피기 활동중에서 소분류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511-519)중에서 미취학 아이의 신체적 돌보기,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및 기타활동과 장애아동을 간호하는 활동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활동의 유사성과 비중으로 볼 때, 질병에 걸린 아동의 간호, 장애아동 간호는 오히려 배우자 보살피기(530)와 활동과 동일항목에서 조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보살피기 활동은 주로 간호와 연관된 항목에 해당되므로, 활동의 사례에서도 배우자의 출근 준비돕기, 안마와 함께 배우자의 간호를 포함시켜 예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의 대상이 되는 활동분류는 우선적으로 국민소득에 산입되는 무급(가사)활동과 산입되지 않는 무급(가사)활동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시간조사의 조사항목 중 조사표 문항의 과학화와 정교화와 함께 생활시간조사의 무급(가사)노동의 활동분류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항목과 서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계청과 노동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임금조사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표본 수를 더 확대하거나, 조사대상 직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무급(가사)노동과 관련된 직종에 대한 정기적인 특별임금조사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된 조사방법은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5년 단위로 임금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매년 정기적인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시 4단위 세분류의 세부직종에 대한 임금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

렇게 임금조사가 개선된다면,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뿐만 아니라 가계무급 생산 위성계정을 정밀하게 개발하는데 새로운 모멘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여 및 봉사활동과 관련된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있어서 대체임금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된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임금을 사용하여 주부의 무급 참여 및 봉사활동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유급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임금조사는 주부 무급(가사)노동활동 중 참여 및 봉사활동을 적극 반영하여 활동영역별로 보다 세분화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金善姬,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評價에 關한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金貞姬, “韓國 주부의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評價와 對 GNP 比率 推定,”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金峻永, “가사노동 계량측정 모형개발” 발표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Syracuse University, 2000, 12.
- 金泰洪, “무급노동의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 2001. 4. 27.
- 金泰洪 外,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정책 영향평가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0.
- 勞動部,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
- _____,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0. 12.
- 文淑才, 「家庭生産」, 신광출판사, 1990.
- 문유경,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사용분석과 정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 공동주최 세미나자료, 2001. 4. 27.
- 박영숙, “주부의 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태와 판례,”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자료, 1995. 7.
- 박은희, “가사노동의 가치와 보험,”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 1995. 7.
- 三星經濟研究所, 「경제동향 Brief」, 1997. 8. 5.
- 정영금, “대체비용법에 의한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 1995. 7.
- 政務長官(第2)室, 「主婦의 家事勞動價値와 稅制改善方向에 關한 研究 - 새 家族法の 定着을 위하여 -」, 政策資料, 90-6, 1990. 12.
- _____, 「主婦의 家事勞動價値와 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政策資料, 91-2, 1991. 11.

- _____, 『主婦 家事勞動의 所得認定基準 設定方案 摸索 - 保險制度의 改善方向을 中心으로 - 』, 政策資料 94-1, 1993. 12.
- _____, 『가사노동가치 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 정책자료, 97-6, 1997. 12.
- 趙勇吉, “非市場產出物의 測定方法에 關한 研究,” 한국은행조사부, 국민계정실, 1998. 12.
- 韓國女性開發院, 『1998 여성통계연보』, 1999. 1.
- 韓國銀行, 『1999 국민계정체계』, 2000.
- _____, 『계간 국민계정』, “無報酬 家事勞動 등 美國의 家計 計定試算 結果,” 2001. 제1호, pp. 98-131.
- 韓國統計廳, 『경제활동인구조사연보』, 1999.
- _____, 『도시가계연보』, 2000. 1.
- _____, 『한국표준직업분류』, 1993. 1.
- _____,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 1.
- _____,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2000. 12.
- _____,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2권』, 2000. 12.
- 洪淳英 外, 『소프트화, 인적자본, 그리고 경제성장』, 삼성경제연구소, 1996. 12.

2. 외국문헌

- Berndt, Ernst R., 『The Practice of econometrics : classic and contemporary』,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1.
- Chadeau, Ann, “What is household’ non-market production worth?,” *OECD Economic Studies*, Spring 1992, pp. 85-103.
- Chandler W.,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n Canada, 1992,” *Canadian Economic Observer*, Cat. No. 11-010, April, 1994.
- Chiuri, Maria Concetta, “Intra-household allocation of time and resources: empirical evidence on a sample of Italian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CSEF., Working paper no. 15, Feb., 1999.

- Cho, Y. G., "Household sector in SNA and the estimation of households accounts in Korea : institutional sector approach," NSO, *Seminar on human resource accounts*, 1998, pp. 87-103.
- Elson, Diane, "Gender awareness in modeling structural adjustment," *World Development*, Vol., 23, No. 11, 1998, pp. 1851-1868.
- Erica, C., "Measuring women's and men's contribution to the economy: Philippine framework," NSO, *Seminar on human resource accounts*, 1998, pp. 181-189.
- EUROSTAT, *European system of accounts*, 1995.
- Fitzgerald, J. and Wicks, J., "Measuring the value of household output: a comparison of direct and indirect approach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June, 1990, pp. 129-141.
- Fitzgerald, John M., Swenson, Matthew S. and Wicks, John H., "Valu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at market prices and estimation of production functi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2, No., 2, 1996, pp. 165-180.
- Fukami, Masahito, "Monetary Valuation of unpaid work in 1996 -Japan-,
International Seminar on Time Use Studies, UNDP and ESCAP, 7-10. Dec., 1999.
- Goldschmidt-Clermont, Luisella "Economic measurement of non-market household activit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29, 1990, pp.279-299.
- Hamid, S., "Non-market work and national income : the case of Bangladesh," KWDI,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1997, pp. 271-302.
- Haveman, Robert, Buron, Lawrence and Bershadker, Andrew, "The utilization of human capital in the U. S., 1975-1992: Patterns of work and earnings among working age males," Working paper, No. 180, Dec., 1996, pp. 1-30.
- Ironmonger, Duncan, "Household production and the household economy,"

Melbourne : Uni. of Melbourne, Dep. of Economics, July 2000, pp. 1-13.

Jackson, C.,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n Canada, 1986," *Canadian Economic Observer*, Cat. No. 11-010, June, 1992.

James, H. S. Jr., "The valu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 How different are the opportunity cost and market price valuation methods?," Working paper, Jan., 1996.

Jenkins, Stephen P., and O'Leary, Nigel C., "Household income plus household production: the distribution of extended income in the U.K.,"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 1996, pp. 401-419.

Jones, F., "Human capital and the use of time," SCB, No. 79, 1995. 7.

Juster, F. Tomas and Stafford, Frank P., "The allocation of time :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a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4, June 1991, pp. 471-522.

Katsuki, O., Setsuko, S., Masanori, I. and Hideki, K., "Monetary valuation of unpaid work," KWDI,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es*, 1997, pp. 344-369.

Kim, T. H., "The economic valuation of women's unpaid work in Korea," KWDI,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es*, 1997, pp. 144-160.

Kooreman, Peter and Wunderink, Sophia, 『The economics of household behaviour』, Macmillan Press LTD, 1997, pp. 73-141.

Kulshreshtha, A. C. and Singh, Gulab, "Valuation of non-market household production," SCB, Working paper pp. 1-12.

Lindh, Thomas and Ohlsson, Henry, "Self-employment and wealth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March, 1998, pp. 25-42.

Llewellyn, Sue and Walker, Stephen P., "Household accounting as an

- interface activity: The home, the economy and gender,"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2000), 11, pp. 447-478.
- Luxton, Meg, "The UN, women, and Household labour : measuring and valuing unpaid work,"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20, No. 3, pp. 431-439.
- Macdonald, Martha, "Economic restructuring and gender in Canada : Feminist policy initiatives," *World Development*, Vol., 23, No. 11, 1998, pp.2005-2017.
- Maddala, G. S.,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9.
- Mariussen, Åge and Wheelock, Jane, 『Household work and economic change: A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ed., Wheelock, Jane and Mariussen, Åg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 Masahito, Fukami, "1996의 無償노동의 貨幣評價," 經濟企劃廳 經濟研究所, 國民經濟計算部, 1998, 11.
- Mikami, Hitoshi, "Time use survey in Japan," Seminar on Time Use Survey, Wednesday, Dec. 8, 1999. pp. 1-12.
- Narasimhan, R. L. and Pandey, R. N., "Some main results of the pilot time use survey in Indi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 SCB, 1999, Working paper.
- Nordhaus, William D., "New directions in national economic accounting," Working paper, Jan., 2000, pp. 1-17.
- Parent, S. L., Rogerson, R. and Wright, R., "Homework in development economics: household production and the wealth of n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2000, pp. 680-687.
-
- _____, "Household production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1996, pp. 21-35.

- Polachek, Solomon W., and Siebert, W. Stanley., "Family labor market incentives: Man and woman working for pay," in Household and family economics, eds., Menchik, Paul L.,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6, pp. 159-200.
- Randall Wary, L., "Theories of value and the monetary theory of production," Working paper No. 261., Jan., 1999, pp. 1-33.
- Shivakumar, Sujai J., "Valuing women's work : theoretical constraints in determining the worth of household and other non-market activity," KWDI,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es*, 1997, pp. 371-406.
- _____, "Valuation as an issue in national accounting and policy analysis," 1999, Working paper, pp. 161-195.
- Sousa-Posa, Alfonso, Widmer, Rolf and Schmid, Hans, "Assigning monetary values to unpaid labour using input-based approaches : The Swiss cas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Helsinki, Aug., 1999.
- Statistics Canada, " Statistics Canada's measurement and valuation of unpaid work," Working paper, Oct., 1998, pp. 1-14.
- Trewin Dennis, "Unpaid work and the Australian economy 1997," working paper, Oct., 200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UN(eds), *System of accounts*, 1993.
- _____, *Household accounting : experiences in the use of concepts and their compilation*, Vol. 1: Household sector accounts, 1998.
- _____, *Household accounting : experiences in the use of concepts and their compilation*, Vol. 2: Household satellite extensions, 1999.
- Varjonen, Johanna and Hamunen, Eeva, "Proposal for a satellite account

- of household production," OECD STD/NA(99)17, 1999. 8.
- Walters, Bernard, "Engendering Macroeconomics : A reconsideration of growth theory," *World Development*, Vol., 23, No. 11, pp. 1869-1880.
- Wheelock, J. and Mariussen, A.(eds), *Households, work and economic change: a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7.
- Williams, Ross and Donath, Sue, "Simultaneous uses of time in household product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 1994, pp. 433-440.